

건축학교육 인증시스템 개발 연구

Study on the Architectural Accreditation
System in Korea

2003. 10. 31

한 국 과 학 재 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는 WTO 가입에 따라 건축분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국제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많은 대학들이 2002년부터 건축학 교육제도 개편을 본격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전통적으로 4년제로 시행되던 건축교육이 이제는 5년제로 급속히 개편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UIA 등 국제사회는 1년간의 수학년한의 연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교육과정에서 인증제도를 정착시켜 능력과 자질이 있는 건축교육이 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년함과 함께 ‘인증 받은 프로그램’이라는 조건 충족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과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축계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이러한 상황과는 달리 국제적으로는 지난 2002년 7월 UIA 베를린 총회에서 「Architectural Education: Reflections and Recommendation」과 「UNESCO-UIA Validation System for Architectural Education」이라는 두 개의 안건이 통과되는 등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안건의 핵심은 앞으로 회원국에 독립된 건축교육 인증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하는 것이며, 만약 독자적인 인증제도가 없다면 UIA가 그 역할을 대행하겠다는 것이 중요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건축교육의 국제화와 건축설계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독자적 건축교육 인증시스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과학재단의 후원으로 연구팀은 목적기초연구의 일환으로 2001년 9월부터 2003년 10월에 걸쳐 한국적인 교육여건을 고려한 「인증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를 보다 내실이 있고 국제화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중국 등의 인증기관 책임자들과 건축학과 교수 그리고 건축계의 실무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거쳐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증제도 수립에 앞서 충분한 준비기간의 배려가 필요한바, 비치자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요구되며, 보고서 양식이나 체크리스트 그리고 실사단을 위한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고, 실사단 풀의 구성방식에 대한 검토등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건축전문교육의 평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적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마련된 자료를 근거로 논의해 보고, 시행하면서 점차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제도적으로 지속적 노력과 관심을 갖도록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 차

1. 서론	7
2. 연구방법 및 이론	8
3. 결과 및 고찰	10
3.1. WTO 와 건축사 상호 인정 및 인증 개념	10
3.1.1. 건축사 제도의 역사	10
3.1.2. 한국 건축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0
3.1.3. 건축학 교육 인증제도	11
3.2. 국내 건축사 인력 현황 조사	12
3.2.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3.2.2. 건설기술 인력 현황 및 전망	12
3.2.3. 건축교육의 공급 현황 분석	13
3.3. 건축교육과 인증제도에 관한 인식분석	14
3.3.1. 응답결과분석	15
3.4. 국외 인증제도 조사	17
3.4.1. 국외 인증사례조사	17
3.4.2. 국외인증 실사참여조사 - 중국	24
3.5. 인증 방법론 설정	27
3.5.1. 인증 개념	27
3.5.2. 인증 목적	27
3.5.3. 각국의 인증제도	28
3.5.4. 인증방식 분석	30
3.5.5. 한국 건축학교육 인증방법론 설정	31
3.6. 인증 내용 및 기준 설정	34
3.6.1. 인증 내용	34
3.6.2. 인증 기준	36
3.7. 인증 절차연구	39
3.7.1. 인증절차 개관	39

3.7.2. 인증 신청	39
3.7.3. 자체평가보고서	39
3.7.4. 실사단 구성	40
3.7.5. 후속조치	41
3.8. 인증 주체	42
3.8.1. 인증원 설립방안	42
3.8.2.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방안 제안	47
3.8.3. 인증기구 규정	49
3.9. 인증절차 타당성 검토	51
3.9.1. 개요 - 모의실사 및 국제세미나	51
3.9.2. 모의실사를 위한 대상학교의 준비사항	52
3.9.3. 국제인증전문가와의 협의	55
3.9.4. 시범실사를 위한 현장실사 점검표	56
3.9.5. 전국 학과장 초청 국제세미나	58
3.9.6. 결론	68
4. 결 론	70
5. 인용문헌	72

부 록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기준(KAAB Conditions and Procedures) 국문	77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기준(KAAB Conditions and Procedures) 영문	111

건축학 교육 인증시스템 개발 연구

1. 서론

WTO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일괄타결방식으로 건축설계시장을 포함한 모든 양허요청 안에 대한 협상을 종료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UIA는 건축사 자격의 질과 내용의 동등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인정을 위한 요건 제시를 위해, 1996년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건축실무에 관한 프로페셔널리즘의 국제장려기준에 관한 UIA협정안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을 마련한바 있고 1999년 UIA 북경총회에서는 상기 협정안을 수정 보완하여 통과시킨 바, 건축교육에서 최소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연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리고 2000년 5월 UIA와 UNESCO는 UIA/UNESCO 건축교육현장을 공동 채택한 후 2002년 7월 UIA 베를린 총회에서 "건축교육: 이상과 권장 (Architectural Education): Reflections and Recommendation)"과 "유네스코-국제건축가연맹 건축교육인증시스템 (UNESCO-UIA Validation System for Architectural Education)"이 통과된 바, 회원들은 해당 국가의 교육 당사자에게 "건축교육연구프로그램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UIA 지침서"에 대한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UIA는 교과과정 및 활동내용이 이 교육현장의 기본정신과 기준에 부합 여부를 직접 인증하는 서비스를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그간 건축교육제도가 4년제에서 5년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03학년 현재 입학정원 기준 건축학전문교육 대상자 68개 대학에 약 3,000명, 5개의 건축전문대학원에 약 400명에 이르고 있다. 수학 연한이 발 빠르게 5년제로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 건축교육 인증제도 마련에 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있지 못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에 따른 건축학 인증 시스템 개발에 관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인증제도에 대한 사례 조사(WTO와 건축사 상호인정과 인증 개념 설정, 건축교육과 인증제도에 관한 인식 분석, 국외 인증제도 조사)와 건축학 교육 인증 방향의 설정 및 인증시스템 모형 개발(인증 방법론 설정, 인증 내용 및 기준 설정, 인증 절차의 개발, 인증 주체의 설정, 인증제도의 타당성 검토, 인증 지침서 작성)을 연구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건축교육인증제의 실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건축전문교육의 전문화와 국제화에 기여하며, 건축전문 학위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 나아가 건축학계와 산업계의 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수준의 우수한 건축인력을 배출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건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축의 사회와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2. 연구방법 및 이론

표 1. 세부연구과제

구분	세부연구과제		세부연구 책임자	
1차년도	국내 건축인력 수급 및 국외 인증 제도에 대한 사례 조사 연구			
	세부내용	1.WTO와 건축사 상호인정 및 인증 개념 설정 • 건축사의 역할과 법률적 지위에 관한 역사적 개관 • 인증의 개념 정의 • 국제 동향 파악	정진국, 이상현, 조성중	
		2.국내 건축사 인력 현황 조사	류전희, 최재필	
		3.건축교육과 인증제도에 관한 인식 분석	이선영, 최재필	
		4.국외 인증제도 조사 • 국외 인증 사례 조사 • 국외 인증 실사 참여조사	미국	최재필, 이선영
			영국	이상현, 정진국
	중국	임창복, 이정근		
2차년도	건축학 교육 인증 방향의 설정 및 인증 시스템 모형 개발			
	세부내용	5. 인증 방법론 설정	이상현, 조성중	
		6. 인증 내용 및 기준 설정 • 인증 내용 지침서 및 수행평가 기준 등의 마련	정진국, 이정근	
		7. 인증 절차 연구 • 프로토콜 - 예비 및 정식 인증 절차 • 결과물의 평가에 대한 기준 마련	류전희	
		8. 인증주체 • 인증원 설립을 위한 방법론 • 인증원 조직과 운영방안 설정	최재필	
		9. 인증절차 타당성 검토 • 인증 procedure 사전 모의실험 • 평가 및 수정 보완	이선영, 류전희	
		10. 인증 지침서 작성	임창복	

표 2. 세부연구과제 진행표

년도	연구 내용		세부 일정														비고
	세부내용	추진내용	9	10	11	12	1	2	3	4	5	6	7	8			
1 차 년도	WTO와 건축사 상호 인정	기초자료 조사															
		개념 정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내 건축사 인력 현황 조사	문헌 조사															
		현장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인증제도 조사	문헌 조사															
		해외 답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간 보고서작업																
2 차 년도	인증 방법론 설정	데이터베이스 분석															
		방법론적 개념 설정															
	인증 내용 및 기준 설정	데이터베이스 분석															
		적용 기준 마련															
	인증 절차 연구	데이터베이스 분석															
		인증절차 지침 마련															
	인증주체	운영방안 마련															
		인증주체기관 설립															
	인증제 도입 타당성 검토	모의실험, 평가															
		수정 보완															
	인증 지침서 작성																
	최종 보고서 작업																

3. 결과 및 고찰

3.1. WTO 와 건축사 상호 인정 및 인증 개념

건축학 교육 인증은 건축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제도의 개념 정의 및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선 서구 사회에서 통용되는 건축사의 역할과 법률적 지위 형성에 관한 역사적 배경 및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20세기 중반 이후 비로소 도입된 국내 건축사제도의 현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3.1.1. 건축사 제도의 역사

건축사라는 자격은 비교적 최근에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나타났다. 건축사 자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축설계 능력을 인정하고 그 전문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말하자면 건축사는 산업 사회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사회의 다양한 조건과 복잡한 조직 속에서 생산되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규제하는 필요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제도화의 절차는 국가마다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유럽과 미국 등의 국외 사례를 통해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항은 건축사의 자격부여는 시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축교육—여기에는 실무수련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과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건축교육이 전제되지 않으면 건축사가 되지 못한다. 건축학교육인증제도는 이러한 건축사 자격부여의 전제조건으로 도입된 것이며, 국제화 또는 세계화가 주요 쟁점인 오늘날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제기된다.

비교적 최근에 결성된 유럽건축교육협회(EAAE)에서도 건축교육인증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건축교육이 점점 더 형식적 질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세계의 각국은 이제 다양하고 복합적인 건축사의 본질적 임무와 학생, 교수, 교수법 등의 국제적 형평성을 동시에 생각하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체제 변경이 아니라, 건축의 새로운 역동성을 구축하기 위한 형식과 과정의 개혁으로 볼 수 있다.

3.1.2. 한국 건축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에서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문적 건축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를 마치면 건축사법이 정하는 실무 경력이 있으면 누구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실무 경력이 건축사 자격시험의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의 연장 또는 그 일부분으로 보는 수련제도와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도 경력을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련제도와는 거

리가 멀다. 따라서 한국의 건축사 제도는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배양되는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라는 국제적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최근 급격하게 변모해 가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건축시장의 개방 및 건축사 자격의 상호인정의 문제는 현행의 건축사법에 대한 부분적인 개정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사법 자체에 대한 전면적이며 대폭적인 사고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3.1.3. 건축학 교육 인증제도

1) 건축학 교육과 건축사 자격 부여 방식

세계시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통합됨에 따라 전문직의 교류는 자격요건의 국제적 검증이라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즉, 건축사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관련된 자격의 상호인정 문제는 그 전제조건으로 건축전문교육에 관한 관심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제건축사연맹은 건축설계용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실무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적 권고기준에 관한 협정”(UIA협정)을 1999년 6월 제 21차 북경총회에서 채택하였다. 그러나 건축은 국가마다 독특한 전통과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건축 전문직 서비스의 자유교역에는 국가간의 쌍무 협상을 통한 건축전문직 혹은 건축사의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건축전문직과 교육의 서비스에 관한 국제적으로 상호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된다. 이 요구에 따라 UIA협정은 건축사 자격의 국제적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최소 5년 전일제 이상의 인증 받은 건축교육을 이수하고 최소 2년(향후 3년 목표) 동안의 수련기간을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건축전문과정의 교육기준을 만들어 건축교육과정을 인증하는 제도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 왔다. UIA가 권고하는 건축교육의 인증은 이러한 선진국의 모델을 근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 WTO에 가입하여 통합된 세계시장의 일원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축사가 국제적 인정을 받고 세계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의 건축교육에 대한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건축학 교육인증은 기존의 정량적 평가에 치우친 기준을 지닌 대학평가제도-대학교육협의회, 중앙일보의 학과별 순위 등-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교육의 수준에 대한 질적 평가로서 전문직으로서 건축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기준이 되는 건축교육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이다.

2) 건축학 교육 인증의 방법과 체계 (NAAB, RIBA)

인증은 프로그램이 교육적인 성취를 위하여 미리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킴을 의미한다. 건축학 교육 인증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즉 교육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미리 정해진 교육의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인증의 방식은 확인의 방법에 따라 벨리데이션과 어크레디테이션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약 100년의 인증의 역사를 가

지고 있는 미국식 인증(Accreditation)은 미리 정해진 기준, 즉 학생 수행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교육과정이 이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인증(Validation)은 수업의 결과물이 미리 정해놓은 교육의 목표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영국식 밸리데이션은 종합적이지만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미국식 인증과는 차이가 있다.

3.2. 국내 건축사 인력 현황 조사

3.2.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전국 건축교육 관련 학교들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기준에 발맞춰 지난 2-3년에 걸쳐 건축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작업은 건축사와 관련 전문엔지니어(Architect & Engineer related Professionals)의 수요예측에 관한 기초연구가 거의 행해지지 않은 채 각 학교들이 처한 여건과 상황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97년 이후에 20여개 대학에서 4년제 건축 관련학과가 신설되었으며 2001년 현재 전국 115개 대학에서 4년제 건축 관련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2년 전국의 30%에 가까운 학교들이 5년제 건축학 과정 및 건축공학 인증과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전문화된 건축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집중적 시설과 인력, 자원의 투자가 요구된다.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위해 건축교육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은 국가 차원의 건설분야 인력 수급에 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각급 학교가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수급예측에 바탕하지 않은 무작위적인 교육 개편은 상당한 개인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며 전문인력의 과잉을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3.2.2. 건설기술 인력 현황 및 전망

1) 건설기술인력 통계

건설기술 인력의 통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자료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등급별 분야별, 학력별 통계를 통해 건축분야 기술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2001년 건축분야 전문분야별 등록현황을 보면 2000년까지 배출된 건축분야 전문기술사는 6300명 내외이므로 자격증을 가진 기술사들이 모두 등록한 것이 아니며 특급기술사에는 기술사 자격이 아닌 학경력 등으로 포함되는 비율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중 시공기술사가 80%를 상회하며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9% 내외, 구조기술사가 8%미만을 차지한다. 또한 평균적으로 기술사 배출 연인원은 400~500명으로 계산되며 최근 몇 년간 통계를 참고한다면 한해

에 600~700명 정도가 전문 기술사로 자격을 취득한다.

건축분야 기술등급별, 업태별 보유기술자 등록분야 현황을 보면 60% 가량이 일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은 25%로 나타난다. 감리회사가 10% 미만을 차지하고 나머지 설계사무소, 각급 공단 등은 미미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2) 건축사 인력의 현황분석

우리나라에서 1965년부터 2001년까지 배출된 건축사의 총인원은 13,967명이다. 1992년까지 200~300명 정도의 소수 인원만 선발하다가 95년부터 건축사시험제도를 개정하면서 연인원을 대폭 늘려 5년간 1000명을 상회하는 인원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2000년 919명, 2001년, 642명으로 대폭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축소 원인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건설교통교부에서 한시적으로 건축사 선발 인원을 1000명 이상 뽑기로 한 기간이 지났으며 2001년 건축사 시험과목이 조정되면서 시행된 첫 해여서 합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2.3. 건축교육의 공급 현황 분석

1) 전국대학 건축관련 프로그램 개편현황 분석

전국 115개 4년제 건축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현재 여러 학교에서 추진 중인 건축학 및 건축공학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으로의 개편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취합한 뒤, 거의 전수조사에 가깝게 2002년 3월4일부터 11일까지 전화설문을 통한 확인작업을 거쳐 113개교에 대한 자료를 재정리한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건축학/건축공학 인증과정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건축학 프로그램은 57개교에서, 건축공학과정은 50개교에서 개편을 확정하였다. 이중 2002년 신입생을 선발한 학교는 건축학 38개교, 1500명 내외, 건축공학 30개교 1000명 내외에 이른다. 프로그램 당 평균 교수 수는 4~5명, 학생수는 36~40명 내외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가 개편 예정인 프로그램들 60개로 확대되면 학생정원은 4500명 내외이며 프로그램당 평균 학생수가 60명, 교수 수는 4인 내외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학전공 총 학생은 2300~2400명, 건축공학전공은 1100~12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여기에다 건축전문대학원이 개설된 학교들의 재학 중이거나 배출된 인원을 더한다면 최소한 400~500명이 추가될 것이다.

표 3. 전국대학 건축학/건축공학 개편 분석표(단위:명)

전공	학교수	정원합계	평균학생수	총교수수	평균교수수	비고
건축학	8	476	59.5	58	7.25	
건축학/ 건축공학	44	1646	38.2	189	4.4	
		1605		163	3.7	
건축학/건축일반	1	50	25	6	3	
건축학/실내건축	1	60	30	6	3	
건축공학	1	46	46	9	9	
건축공학/건축일반	1	60	30	4	2	
건축학/건축공학/건축일반	1	60	60	5	1.7	교수수/ 전공수
건축학/건축공학/실내건축	2	230	115	18	3	
건축공학/건축설비	1	240	120	8	4	
합계	60	2,368	61	466	4.15	
개편논의중인 학교	23					
현행체제 유지학교	26					
합계	114					

표 4. 건축학/건축공학 인증과정 진행상황(단위:명)

	프로그램수	정원합계	평균학생수	총교수수	평균교수수
건축학 개편교	57	2247	40.1	272	4.9
2002년 실시교	38	1498	39.4	139	5.2
건축공학 개편교	50	1346	39.2	197	4.2
2002년 실시교	30	979	36.3	111	3.7

앞의 여러 통계표들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 건축사 연 배출인원은 600명~800명 내
외이며 기술사의 숫자는 전문분야를 다 합쳐도 현재 7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연 배
출인원은 500~6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경기전망 및 건설동향, 전문프로그
램의 인증문제 등이 모두 불투명한 상황에서 각 학교는 좀 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
육목표를 가지고 현재 급속히 변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구조변화와 건설 산업 동향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증대상 프로그
램이 아니더라도 지역 여건과 학교별 상황에 맞는 특화되고 개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3. 건축교육과 인증제도에 관한 인식분석

2002년 1월 28일부터 동년 2월18일 사이에 건축사,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팩

스 수신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응답자 선정 및 설문 참여범위는 다음과 같다.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1080여개 설계사무소를 기준으로 2인 이상이 대표로 등록되어있는 사무실에 한하여 팩스를 통하여 조사되었으며 교수의 경우 전국의 건축 관련 교수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팩스조사를 병행하였다. 학생의 경우 900여개의 건축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에 대한 메일 발송과 운영자 공지에 의해 무작위로 이루어졌다.

3.3.1. 응답결과분석

1) 인증제도 시행 시 당면문제를 묻는 항목에서는 몇 개의 항목에 응답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학생 및 기존건축사의 자격미달 문제, 인증기관 및 기준의 공정성 문제, 인증제도가 정착되기까지의 혼란이 공통으로 꼽는 문제였다. 반면 인증/비인증 대학간의 위화감 및 서열화나 건축학 과정 중 중도탈락 학생의 문제, 학생진로 및 프로그램별 특성에 유연성 결여문제는 학생과 교수에 국한하여 응답횟수가 많았다. 대학 내 연구 분위기 위축문제는 교수들에 국한되어 언급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건축사 인력수급의 문제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히 인식의 부재를 보여준다. 이는 인증제도에 대한 합의도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2) 인증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국내 건축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그룹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여 주었다. 교수와 학생그룹은 함께 건축관련 진로의 유연성 부여, 대학간 건축 관련 프로그램의 구조조정, 설계담당 전임교수의 실무참여를 꼽은 반면 건축사와 교수그룹은 함께 꼽은 항목이 겸임교수의 현실화 및 확대에 관한 항목에만 국한되었다.

특히 설계담당 전임교수의 실무참여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기본적 방향에서는 긍정적이었던 반면 그 방법에 관해서는 견해를 보였다.

3) 인증제도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교수들의 대부분이 ‘잘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과 건축사는 ‘들은 적이 있으나 자세히 모른다’고 대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건축학교육의 인증에 요구되는 새로운 내용과 관련된 교과내용, 수업연한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WTO와 관련된 시장개방에 대한 정보와 대응에 있어 충분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건축교육과 관련된 인증제도의 성격이 ‘건축사’라는 특정 전문가집단의 경쟁력제고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건축사들의 이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 참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항목인 인증제도가 확립될 때 인증의 주체에 대해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 반수 이상이 건축사협회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실은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또한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질 면에서 보강된 졸업생들이 배출된다면 인증 받은 학교 졸업생

들을 선호하겠다고 90%이상이 응답한 사실, 그리고 응답자의 70%이상이 비인증 학교의 졸업생과 비교하여 인증받은 학교의 졸업생에 대하여 초봉 인상 등의 차등을 두어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인증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증제도의 정립시 건축사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인이 국제적인 건축사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단기 코스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2/3 정도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항과도 무관하지 않다.

- 4) 학제의 개편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응답 교수가 소속된 학교의 2/3이상이 5년제 건축학을, 50%이상이 건축공학을 선택하여 학제개편이 인증을 대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한 이러한 학제개편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근본적인 인력수급의 문제가 아닌 보다 개별적인 차원의 사안들이었다고 응답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자신이 재직중인 건축학 프로그램이 건축사 시험제도가 개편되는 2008년까지 인증 받을 가능성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설문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특히 50%가까운 채택율을 보인 ‘주변학교 동향 및 인증에 대한 압박’이라는 문제는 인증/비인증 대학간의 위화감 및 서열화에 대한 교수들의 우려를 그대로 대변하는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다.
- 5) 국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몇 %의 국내 학교가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인증기준에 부합될 것인가’를 묻는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50%이상이 전체의 30%라고 응답한 점이나 ‘국내대학의 어느 정도가 국제적 인증을 위하여 건축대학원 혹은 5년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를 묻는 항목에서 60%이상이 전체의 30%라고 응답한 사실은 자신이 재직 중인 건축학 프로그램이 학제를 개편하면서도 건축사 시험제도가 개편되는 2008년까지 인증 받을 가능성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태도와 상충되는 사항이다. 이는 교수들이 인력수급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인증문제나 학제개편을 접근하기보다는 주변학교들과의 서열화나 학생 유치문제를 인증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6)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이와 같은 인증을 목표로 한 전반적인 학제개편의 분위기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질문과 비교되어 분석할 만하다.

표 5. 학제 선호의 이유표

설문항목	답변	B.Arch 5년제 건축학	B.Sc 4년제 건축일반	전문대학원 진학전제로 건축학4년	M.Arch 전문대학원 3년제	잘 모르겠다	Missing Value
건축설계 전공을 위 하여 건축 학과에 새 로 입학한 다면 어느 학제를 선 택하겠는 가?	1. 학비와 관련된 경제적 이유	44.4%	22%	22.2%	15.6%	15.6%	
	2. 도중에 실무경험의 기회를 얻고 싶어서	38%	25%	19.4%	20.0%	2.5%	5%
	3. 더 나은 학교로의 이동가능성을 위하여	7%	15.4%	43.5%	12.8%	7.7%	
	4. 5년제는 학사, 4+2년제는 석사라는 학위 때문에	20.5%	4.9%	51.2%	7.3%	7.3%	
	5. 선택의 여지를 갖기 위하여	29.3%	10.0%	38.0%	16.0%	4.0%	
	6. 전문교육의 질과 강도가 더 높을 것이므로	32.4%	4.1%	23.4%	17.9%	2.1%	

3.4. 국외 인증제도 조사

국외인증제도 조사는 국외인증사례조사와 국외인증실사참여조사가 연구내용으로 수행되었는데, 국외인증사례조사는 해당국의 건축교육인증기관을 방문하여 인증기관의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담당자 및 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수하고 관련자료를 취득하였다. 국외인증실사참여조사는 미국, 영국, 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였다.

3.4.1. 국외 인증사례조사

1) 미국

가. RISD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미국) 방문

방문일시	2002년 4월 19일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방문자	최재필
면담자	Feld (학과장, 부교수)
방문목적	RISD는 지난 4월 6~10일 NAAB으로부터의 실사를 받은 학교임. 이 학교의 실사 중 옵저버(observer)로 참여하려 했으나, 학교로부터 거절 당함. 그 대신 실사 후 바로 학교를 방문하여 실사 당시의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얻기로 함.

☐ NAAB의 실사 도중 팀룸을 유지하게 되어있음. 여기에는 인증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거의 모든 자료가 전시 또는 제공되어 있으며, 실사 팀원들이 문서자료를 보거나 토론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공간임. 이 공간의 열쇠는 실사 팀만 가지게 되며, 각종 자료 외에 컴퓨터, 전화 등이 제공 됨. 우리가 방문했을 때 이 방은 일부 컴퓨터 등을 제외하고는 잘 보존되어 있었음. 약 630평방피트(17평)의 방의 출입구 쪽 벽에는 각종 자료를 모아 놓은 서가가 있었고, 또한 합판으로 만든 접이형 도면전시대(flappable folder)를 제작하여 거기에 사이즈가 큰 도면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었음. 전시 면적이 없는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었음.

☐ 인증대상: B.Arch & M.Arch (한번에 인증실사가 이루어짐)

☐ 인증준비:

시점		준비과정
1년 6개월전	2000년 9월	인증을 위한 준비가 시작됨
1년전	2001년 봄	학생들의 스터디 자료를 모으기 시작함 (APR이나 실사에서 1년간의 자료를 제시하게끔 되어 있음)
6개월전	2001년 9월	APR 완성

☐ 준비작업 분업:

- 전임교수 중 2명이 자료 수집을 맡고, 2명이 전시, 2명이 팀룸, 마지막 1명이 교수업적 준비를 담당함 (교수업적을 'faculty show'라고 하는 것이 특이했음)
- 그 외 다수의 학생들이 준비작업에 참여했음

☐ 예산: 약 \$10,000을 학교로부터 지원 받음 (행정직원 보조 포함)

☐ 옹저버의 존재는 중요함: 프로그램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프로그램을 대신해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음. 대개의 경우, 실사 대상인 프로그램에서 옹저버를 제안하여 방문단장(team chair)이 승인하는 것으로 생각됨.

☐ 여러 가지 시설자원(resource)의 평가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가 보다는 건축 프로그램이 전체 대학교의 지원을 공정하게 받고 있는 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음. 즉, 다른 프로그램에 비교해 볼 때 동등한 시설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함 이것은 학교측의 건축학 프로그램에 대한 위임(commitment of the institute to architecture program)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

☐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였으나, 거개가 다 인증 및 인증실사 절차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C&P (NAAB Conditions and Procedures)에 이미 상세히 밝혀져 있음. 이 C&P만큼은 비용이 들더라도 한글로 번역(그것도 완역)이 되어야 할 것임.

나. NAAB(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ation Board, 미국) 방문

방문일시	2002년 4월 22일 (월) 오전 10시 ~ 오후 2시 30 분
방 문 자	최재필
면 담 자	Matthews (Executive Director, AIA)
방문목적	NAAB의 출판물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이 기관 실무 책임자와의 상견례

☐ 총 4명으로 구성.

- Executive Director/Accreditation Manager/Financial Manager/Communications Manager
- EESA Coordinator (새로 자리를 하나 만들 예정임)
- 이러한 보직(permanent position)에 더해 필요할 때마다 컨설턴트를 구하여 일을 추진함

☐ NAAB의 예산 편성 및 집행

- 2002년 전체 예산은 수입 \$774,784.00 지출 \$723.768.00

☐ 인증 실패 - NAAB의 인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 40년 역사상 처음 인증 후 계속인증에 전적으로 실패한 프로그램은 없었음 (물론 인증유예는 있었음)
- 인증대상후보(Candidacy)를 신청한 후에 도저히 실제 인증이 안되겠으면 이를 철회치레를 위해 인증대상후보를 포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음
- 중점방문(Focus Visit) - 6년간의 인증 기간 중에 인증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한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해짐

2) 영국

방문일시	2002년 5월 2일
방 문 자	이상현
면 담 자	Rod Hackeney(전 RIBA 회장, 전 UIA 회장) Chris Ellis (Director of Validation Service/ Acting Head of Education)
방문목적	RIBA의 출판물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이 기관 실무 책임자와의 상견례

☐ 영국의 학부과정이 3년인 이유는 초등 교육과정이 13년이기 때문인 듯 하다고 함. 스코틀랜드는 4년과정이 많은데 여기는 초등교육과정이 12년임

☐ 마스터(Master)나 디플롬(Diplome)의 학위명은 아무래도 관계가 없으나 정부 대부 정책(Loan system)과 관련이 있음

- ☐ Part 1이 끝난 후부터 실무 훈련을 할 때 학생별로 기록도서(record book)를 작성. 지금은 웹을 통해 작성하고 있음(<http://www.pedr.co.uk>)
- ☐ Part 1에서 Part 2로 진입하는 학생은 약 80%
- ☐ 이러한 교육의 운영과정은 학교별로 융통성이 있는데 예로, 어떤 학교는 Part 1의 처음 1년과정을 공동이수과정으로 하여 다양한 전공의 과정이 공유하도록 하기도 한다.
- ☐ 교육과정 이수와 상관없이 Part 1, 2, 3을 대신하여 외부 편입(external entry)을 위한 시험과정이 있음. RIBA에서는 일년에 한번 각 과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 디자인, 시공, 역사 등 RIBA의 인증 기준(Criteria for Validation)에 맞는 과목. 과목별 5문제 정도 출제. RIBA의 평가위원회(Board of Examiner)에서 출제하고 주관한다고 함
- ☐ 1년에 약 120명 정도 응시하고, 점차 느는 추세인데 이유는 학비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함
- ☐ Part 3은 강의 과정이 아니고 실무훈련과정인데 시험과 인터뷰를 통해 통과하며 Part 3의 인증은 이러한 시험을 보는 학교를 인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Part 3의 인증은 하루에 끝남. 이것은 지극히 영국적인 방식이라고 하며 해외에서 Part 3을 인증한 경우는 1곳 (더블린대학) 밖에 없음. 1년에 1-2번 정도 실시하며 학교끼리 같이 하기도 함(예: AA와 Cambridge)
- ☐ 영국 내 Part 1,2를 인증받은 학교는 36학교 그러나 Part 3을 인증받은 학교는 20학교이다.

표 10. 영국의 건축교육시스템

3년 B.A 과정	1년 실무	2년 Master or Diplome	1 년
part 1		part 2(실무위주교육)	part 3

가. 조직

- ☐ 교육분과의 운용비용은 기본적으로 RIBA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듯함
- ☐ ARB는 정부기관: 16명의 직원.
- ☐ 모든 교육과 인증행위는 RIBA와 ARB의 협력으로 진행됨
- ☐ ARB의 인원은 실제로 RIBA의 회원으로 많이 공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 RIBA 회장 2명이 ARB를 위해서 일함. (하고 있음)
- ☐ RIBA와 ARB의 차이점은 인증관련행위임. ARB는 국내에만 권한이 있고 RIBA는 국제인증행위에 참여. 그러나 건축가의 등록과 사무소개설은 반드시 ARB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나. 인증

- ☐ 방문실사패널(Visiting Board Panels, VBP)의 구성

- VBP 은 현재 40명 정도로 구성
- RIBA와 ARB는 각각 별도로 VBP를 구성
- 구성방식은 공모를 통해 이력서를 받고 서류심사를 한 후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하는데 규모가 큰 회사, 작은 사무실, 교수, 건설업계, 여론조사업계 등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한다. 선발된 패널은 1년에 두 번 트레이닝을 하는데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하여 교육하고 RIBA/ARB와 공동으로 한다.
- 방문실사패널의 선발방식
 - 대개 5월말에 1년의 방문실사 일정이 정해지면 패널에게 일정을 보내고 각각 1-2 학교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때 학교이름을 삭제하고 날짜만 보낸다. 명단이 정해지면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거부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대개 그 학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보드는 최소 6-8명으로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해외인증은 4명 정도로 구성). 패널은 보통 5년 정도 하면 은퇴함.
- RIBA의 경우는 국제인증패널을 별도로 구성하는데 국내인증 패널을 2년 이상 한 다음에 국제인증 패널이 될 수 있다.
- ARB의 경우는 국내인증 패널만 구성하고 5년 임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인증자문위원회(Validation Advisory Group, VAG)
 -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 이 그룹은 RIBA와 ARB가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리포트는 각각 따로 한다.
- Part 3의 인증은 학교의 시험과정을 인증하는 것으로 필기시험과 인터뷰로 구성된다.

3) 중국

방문일시	2002년 2월 27-3월 2일 2002년 5월 2일
방 문 자	임창복, 이정근
사전조사	2001년 12월 3일-6일, 중국의 건축교육 인증제도 관련 담당자들을 소개받기 위해 중국 건축학회 참여.
방문목적	인증 관련 기관인 국립건축교육 인증위원회(NBAA), 중국건축 학회(ASC), 중국건축사 등록원(NABAR)을 방문하여 연구자료 입수.

가. 중국 건축 인증제도의 고찰

89년도 말부터 중국 건축계는 선진국의 건축사법을 참조하여 건축사의 국제 인증을 목표로 강도 높은 건축교육 개혁을 시작하였고, 현행 중국 건축교육 및 건축사 제도는 90년도부터 제정하기 시작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 출발한 중국의 인증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나 개선할 점을 배울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고 있다.

나. 건축 전공의 기초와 발전

중국 건축 교육은 1923년 장수성(江蘇省) 수저우(蘇州)에서 시작되었다. 건축과는 1928년 난징의 중산[Zhongshan] 第 4 大學校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1952년 대학-학과의 조정이 있는 후, 6개 대학교에서 건축과를 설치하였다. 이후 1966년, 현재 8대 最古 대학교로 불리는 8개의 대학이 건축과를 설치하였으며 1977년 이후 건축교육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16개 대학교가 1981년 건축과를 설립하였고, 1988년에는 46개 대학교로 늘어났으며, 1996년에는 약 65개 대학교에서 건축과를 두고 있다.

다. 대학 건축 학부 과정의 변화

1966년 전에는 건축과가 건축전공 5년제로 세워졌다. 1974년부터 1976년까지, 교육체계가 3년제로 변화되었다. 이 짧은 기간동안 교육의 질은 심각하게 떨어졌다. 1977년 이후 건축소양을 갖춘 인물에 대한 긴한 요구에 대응하여 교육제는 일시적이거나 4년제로 바뀌었다.

건축교육의 발전을 위해 일부 대학교는 1990년을 즈음하여 그들의 건축 교육제를 5년제로 수정하였다. 텐진대학교의 건축과도 이와 같이 5년제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그 후 1997년에 학교제도[school system]가 되었다. 또한 베이징의 칭화(淸華)대학교, 난징의 東南대학교, 상하이의 同濟 대학교[원명칭: 同濟大學]와 같은 대학교들은 이 때를 전후하여 교육제도를 5년제로 수정하였다.

1989년 중국의 건축교육 인증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1992년에 처음으로 4개 대학(칭화, 동지, 천진, 동남), 건축과 또는 건축학부가 국립건축인증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Architectural Accreditation)에 5년제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중간 검사가 1995년에 승인되었다. 1997년까지 14개 건축과가 그들의 학부 교육을 인증 받았고, 12개 학과가 그들의 대학원 과정(건축학 석사 전공, Master of Architecture speciality)을 인증 받았다. 2002년 현재 78개의 대학이 있으며 이중 22개 대학(5년제)이 인증을 완료하였다.

라. 국립건축인증위원회(NBAA)의 역할 및 구성

고등건축교육에 관한 국가운영위원회가 설치한 특별관청으로 정부 교육건설부처의 위탁을 받아 고등건축교육기관의 인증을 시행하고 또한 중국건축학회(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다.

□ 조직

- ① 구성: 위원회는 15~17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명은 중국 건축학회(ASC)에서, 6~7명은 건축 전문가, 나머지 6~7명은 선임급 건축가들이고 마지막 2명은 관련 국립 건설부서와 교육부서 책임자로 구성한다.
- ② 기금: 위원회의 기금은 주로 신청 수수료와 신청 대학의 인증 수수료이며, 건설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사회의 후원을 받는다. 위원회는 지출 방법을 결정하며 인증 수수료는 인증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 기능과 권한

① 지도와 자문: 인증 위원회는 전국 학교와 건축학과에 다음을 포함한 관련 조언을 제공한다.

- (1) 인증을 위한 신청을 하려는 건축 학교와 학과의 진행을 위한 지도와 조언을 제공.
- (2) 인증에 실패한 건축 학교와 학과의 진행을 위한 지도와 조언을 제공.
- (3) 인증에 합격한 건축 학교와 학과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 지도와 조언은 국립 건축 대학 교육 인증 기준에 따라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에 상응하는 방법, 질적 요구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련 학교와 부서들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② 인증위원회의 업무 및 인증 3단계 과정: 심사신청, 자체평가 보고서의 검토와 승인, 전문가 현장평가단의 파견, 현장 평가서의 검토와 승인, 인증서 판정과 인증서 교부.

(1 단계) 신청과 검토: 인증 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2 단계) 평가와 결과: 인증 위원회는 신청학교의 자체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평가 계획과 방문 일정을 짜고, 방문단을 파견하고, 방문 보고서 심사과 최종 인증 결과를 작성한다.

(3 단계) 이의와 판결: 인증 결과에 불복한 대학들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 문서를 받으면, 인증 위원회는 판결을 위해 건설부의 교육책임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부가 구성한 판결 기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 전문가 현장평가단: 방문단은 인증 위원회의 임시 기구이며 신청학교의 교육에 대한 즉석 현장 조사를 하고, 인증 위원회에 평가 제안을 하는 것이다. 방문단의 구성원은 인증 위원회에 의해 구성된다. 방문단은 5내지 7명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인증 위원회 내에서 선출된다. 그들은 2명의 선임급(senior) 건축가 그리고 다른 2명은 조교수 또는 그 이상의 직급이어야 하며 1명은 학생 대표이다. 방문의 경험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그들 중 2명은 방문에 참가한 사람이어야 한다.

마. 중국의 건축교육 인증절차

심사신청, 자체평가 보고서의 검토와 승인, 전문가 현장평가단의 파견, 현장평가서의 검토와 승인, 인증서 판정과 인증서 교부의 순서로 진행된다.

바. 인증 결과

결정은 회원의 3분의 2 또는 그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① 인증 합격 그리고 유효기간 6년
- ② 인증 합격 그리고 유효기간 4년
- ③ 인증 본질적으로 합격 그리고 조건부 유효기간 4년
- ④ 인증 탈락 그리고 신청 기관은 4년 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3.4.2. 국외인증 실사참여조사 - 중국

☐ 인증실사대상 대학: 북경 공업대학(Beijing Polytechnic University) 건축과

☐ 인증실사기간: 2002년 5월 19일 ~ 5월 21일

☐ 인증심사원: 진우국(청와대 건축대학 원장, 중국건축교육 인증원장)

주창(중국 건축학회 비서장)

장옥곤(천진대학 건축과 교수)

주도(건설부 교육담당관)

☐ 참관자: 임창복(성균관대 건축과 교수)

한동수(한양대 건축과 교수)

1) 개요

중국의 건축교육인증제도는 1992년부터 중국 건축교육인증원(National Board of Architectural Accreditation)의 주관 하에 시행되고 있다.

1992년 최초의 인증시기에 청화대, 천진대, 동제대, 동남대 등 4개교가 인증을 받았고, 94년도에는 할빈공대, 서안과기대, 중경대, 화남이공대 등 4개교가 추가되었다.

그후 14개교가 추가되어 현재 중국에서 인증 받은 5년제 학교는 22개교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건축학 전공인증은 학교에 따라 6년, 4년, 2년의 3단계가 있는데 금번 참가하게된 북경공업대학은 지난 1998년에 실사를 하여 그 당시 4년 인증을 받았고, 이번에 두 번째 인증실사를 받게 된 학교이다.

인증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일정들에 의거 48개항으로 구성된 평가 항목을 조사하고 기록하며 평가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학교측과 학생들에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2) 평가 일정표

표 12. 건축학 전공 교육평가 소조 북경공업대학 시찰일정

일자	시간	내용	장소	비고
18일 (토)	저 녁	18:30	평가위원 도착	회원빈관
		20:30~ 21:30	소조회의	평가위원 상견례
				시찰학교 자체평가보고서 재심 및 의문과 논점 제기
				시찰 일정표 및 시찰 중점확정
		소조위원과 과주임: 시찰준비작업		
19일 (일)	오 전	07:30~ 08:00	아침식사: 소조위원, 과주임	회원빈관 식당
		08:00~ 09:30	소조회의	<평가기준>, <평가순서와 방법>중 관련부분 숙지
				시찰기능과 수칙 강조
				전체 시찰순서, 시간, 내용 및 각자 역할 확정
		09:30~ 12:00	소조위원	대학본부 및 학과 행정, 교학 책임자 회동
				대학본부 및 학과 행정, 교학 학술 책임자 회동
				소조전용 회의실 순시
	오 후	12:00~ 13:00		캠퍼스, 강의실 분포상황 숙지
			오찬: 위원 및 대학본부와 학과 책임자 3~5인	제1식당
		14:00~ 18:00	소조위원	교학시설, 학과 경영조건 순시
				교학관리 상황 시찰
				실천성 교학부분 및 성과 심사
		18:00~ 19:00		학생 작업 및 작품 심사
			저녁식사: 소조위원	회원빈관 식당
	저 녁		소조회의	하루활동 심사. 시찰내용과 진도에 대해 조정이 필요 한지 여부 검토
				학교가 제공한 보충자료연구
				학생저녁자습, 학생관리 시찰
				기숙사
20일 (월)	오 전	07:30~ 08:00	아침식사: 소조위원, 과주임	회원빈관식당
		20:30~ 21:30	소조위원	전공이론과목 교학상황 참관
				전공과정 교학상황 참관
				교학계획, 교과과정○○, 교재등 교학서류 심사
				교양교과 과정, 전공교과과정
				교수대표와 회동
		12:00~ 13:00		전공교과과정 교수대표와 회동
			점심식사: 소조위원, 대학, 학과 교수 대표 3~5인(건축기술분야)	회원빈관 식당
20일 (월)	오 후	14:00~ 18:00	소조위원	학생대표회동
				졸업생 대표회동
				학과 학생(사전통지, 자유참가)와 회동
				사업자 대표와 회동
				관련 교과과정, 건축사직업, 도덕교육 상황이해
				시찰 상황에 근거하여 기타 실사방법 보완
	저 녁			학생작업, 작품 실사
			저녁식사: 소조위원	회원빈관식당
			소조회의	하루활동 실사
				학생작업, 작품심사
				관련 교육문건과 교학실사
				<시찰보고서> 예비토의
				시찰증거 부족부분 여부 검토

21일 (화)	오 전	07:30~ 08:00	아침식사: 소조위원, 과주임 서로 의견교환		회원빈관 식당	
		08:00~ 12:00	소조위원	증거수집, 부족부분 보충, 확인	평가 작업실	
				<건축학 전공교육평가 근거취합표> 작성		
				<교육과정, 교학조건 평가 상황표> 작성		
				<사찰보고서> 작성		
	오 후	12:00~ 13:00	오찬: 소조위원, 교수대표(건축설계과목)		회원 빈관식당	
		14:00~ 18:00	소조위원	대학본부 관련 책임자 회동	二教	
				학과 행정교학, 학술 책임자 회동	202호	
				고별회	南區 知心園	
		18:00~ 19:00	만찬: 소조위원, 대학본부, 학과 교수대표		제1식당	
			소조위원 학교출발			

3) 인증실사 진행과정

1	2	3
		
인증실사단과 학교측과의 만남: 학교측에서는 총장, 부총장, 학장, 학과장 등 행정부서의 인사들과 학과 교수가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학생의 건축표현 과제물: 건축표현의 과제물을 보자르 스타일의 표현기법에서 사실적 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실습되고 있다.	팀룸: 자재화와 색채구성연습실이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되고 있다.
4	5	6
		
색채구성실습: 대회의실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곳에 5년에 해당하는 각종 과제물을 보관하고 있어 실사의 부요 대상이 되고 있다.	설계시간: 1개 학년 정원이 50명이며 25명씩 2개 반으로 설계수업을 하고 있다.	최종 결과의 전달: 학교측에 최종 실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전달한다.

4) 결론

금번 중국 측의 배려로 자신들의 교육내용을 모두 들어내 보이는 인증과정에 실사단과 함께 참관자(observer) 자격으로 끝까지 함께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된다.

인증에 참여하며 가졌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건축교육 인증제도는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과 「중국의 건축교육 인증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인증참여를 끝내며 갖게 된 시각은 건축문화의 발전과 이를 이끌어 가야할 능력 있고 책임 있는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인상을 받았고, 중국 건축교육 인증원과 대학 측이 외국의 참관자를 받아들이는 데서 보듯이 그들은 이미 국제적으로는 손색이 없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현재 건축학과 공학 분야가 통합되어 있는 점도 교육의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지만 교육보다는 연구를 우선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인증을 대비한 건축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단에 의하면 금번실사에 참여하게 된 대학은 중국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0위권의 학교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진단한다.

그럼에도 학생수가 학년 당 약 50명, 학생당 사용면적 16.8㎡, 교수(교수, 부교수 22명)와 강사(강사 20, 조교 6)의 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보다는 매우 양호한 여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인증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준비단계→ 합동 시범인증단계→ 시범인증단계→ 인증단계 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용은 준비단계를 위한 과제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합동시범인증의 단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설계과제 수준, 이론교과내용, 시설수준 등에 대해 국제적이며 객관적이고 비교적인 시각을 얻어야 체계적인 「한국적 건축교육 인증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5. 인증 방법론 설정

3.5.1. 인증 개념

인증은 평가기관이 교육적인 성취를 위해 미리 정해놓은 교육기준을 프로그램이 만족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프로그램의 자기평가서, 평가기관의 자기평가서 검토 그리고 현장실사, 평가기관을 대표하는 팀의 종합리뷰로 구성되며 이것은 구체적인 평가의 방법과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3.5.2. 인증 목적

건축교육의 인증은 건축사 교육의 내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건축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건축교육인증원(NAAB)은 건축전문교육

인증의 목적을 “건축사교육의 적절한 수준을 만족하는 것. 지적, 공간적 기술적 대인관계의 기술에 능하고 건축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문맥을 이해하고 건축디자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사회에서 건축가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NAAB의 C&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축교육의 내용은 사회적 요구의 변화, 지식의 발전과 실무영역의 변화, 교육과 실무의 관계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인증기관이 교육의 목적을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학교가 스스로 자신의 교과과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하며 이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건축학교육인증은 각 학교의 이러한 자기인식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성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건축교육인증은 인증과정을 통해 건축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건축교육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원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기관 내에서 건축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3.5.3. 각국의 인증제도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는 미국과 영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중국에서도 수 년 전부터 자체 인증제도를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국제적 활동을 전개하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이다. 본 연구에서는 약 100년 전부터 이 두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아울러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제건축사연맹(UIA)과 유네스코의 건축교육인증제도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인증방법론을 설정하고자 한다.

1) 미국의 인증제도

미국은 건축학 교육이 일반대학에서 이루어지면서 전문직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에 관한 인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리노이 주에서 1897년 건축사 면허법과 관련하여 주법으로 제정하여 1898년 처음으로 시행했고, 1903년 엠아이티(MIT)와 펜실바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을 비롯한 몇몇 학교의 건축학위를 인정하여 이들에게 건축사 시험자격을 부여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제도적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1912년 미국 건축대학협의회(ACSA)가 설립되면서 건축학교육의 최소기준을 설정했고, 건축학교는 인증을 통과해야만 ACSA의 회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40년 이후 이 제한이 철폐되고 미국건축사협회(AIA)와 미국건축사등록위원회(NCARB), 미국건축대학협의회가 공동으로 건축학교육인증원(NAAB)을 설립하여 미국 전체 대학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영국의 인증제도

영국은 1836년 영국왕립건축사협회(RIBA) 현장에서 건축사 양성을 위한 건축학교육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1863년부터 영국왕립건축사협회는 자체의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1882년부터는 이 시험의 통과가 건축사의 직능단체로서 영국왕립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이 후, 영국에서도 건축학교에서 건축학교육이 시행되면서 1924년 건축학교의 요청에 의해 영국왕립건축사협회는 건축학교육을 인증하기 시작했고, 인증된 학교의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국왕립건축사협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1931년에는 건축사등록법의 시행과 함께 건축학교육기준과 그 자격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1992년에는 영국왕립건축사협회와 정부기관인 에이알비(ARB)와 공동으로 건축학교육인증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3) 국제건축사연맹(UIA)의 인증제도

국제건축사연맹(UIA)은 국제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이루어지는 서비스 자유교역이 건축설계업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심층 연구하면서 건축설계 부문의 국가간 쌍무협정에 대비하고자 분주히 움직여 왔다. 국제건축사연맹은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선언한 UIA/UNESCO 건축교육헌장(1996.7)을 통해 건축학교육의 목적과 지침을 천명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교육인증제도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인증제도는 각 국의 문화적, 교육적 전통과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장려하고 있으나, 동시에 세계의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축 교육의 교과과정과 기준을 개괄적으로 그러나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혹은 새로운 건축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한 인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UIA와 UNESCO도 직접 개별적인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에도 참여하며 또한 각국의 인증원을 인정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IA/UNESCO 건축교육 인증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2003년 3월 현재, 독일 스페인 브라질 등은 이미 UIA의 인정 혹은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UIA이사회에 보고되어 있다.

4) 중국의 인증제도

중국은 1989년부터 건축교육인증제를 준비하기 시작하여 1992년 미국의 건축교육 인증기관인 NAAB과 영국의 ARB가 옵저버로 참여한 가운데 처음으로 4개 대학(청화, 동지, 천진, 동남) 건축과 또는 건축학부가 인증을 받았다. 1997년까지 14개 건축과가 학부교육을 중국국립건축인증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Architectural Accreditation)에 인증받았고, 12개 학과가 대학원 과정(건축학 석사 전공, Master of Architecture speciality)을 인증 받았다. 중국은 영국과 미국의 인증제도를 절충하여 자체 인증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며 48개의 수행평가항목을 가지고 건축교육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중국에는 78개의 대학이 있으며 이중 22개 대학(5년제)이 인증을 완료하였다.

3.5.4. 인증방식 분석

1) 인준(Validation)과 인증(Accreditation)

건축학교육인증 방식은 크게 영국계의 인준(validation)과 미국계의 인증(creditation)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인준과 인증은 근본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구체적인 평가의 철학과 방법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다.

약 100년의 인증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식 인증(creditation)은 상세한 평가기준 항목을 미리 설정하고 이 기준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평가의 방식은 분석적이고 계량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영국의 인증방식인 인준(validation)은 수업의 결과물을 놓고 교육의 질이 정해진 교육의 최소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교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며 그 과정이나 방법은 규정하지 않고, 교육의 과정이 반드시 미리 정해진 궤도를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영국식 인준(validation)은 평가의 방법이 종합적이지만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분석적이고 계량적인 미국식 인증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평가방식의 차이는 그 나라의 건축전문직의 성립과정과 건축전문교육의 역사를 반영한다. 미국은 건축전문교육이 전문직능단체에 의해 주도되기보다는 대학교육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문직의 성립에서도 학교가 주도권을 잡았다. 따라서 건축전문교육의 인증방식은 대학의 학문적 틀 속에서 체계화되었으며 객관적 근거를 중시하는 미국식 실용주의가 반영되었다.

반면 영국은 건축전문교육이 오랜 전통을 가진 건축직능단체(RIBA)를 통해 먼저 이루어졌고, 학교의 건축교육인증도 전문직 단체에 의해 주도되었다. 교육의 과정이나 수단보다는 결과를 강조하는 영국의 방식은 영국의 건축전문교육이 전문직 단체에 의해 주도된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다. 전문직능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의 교육은 그 결과가 건축전문직에 요구되는 최소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평가의 방식이 굳이 분석적이고 계량적일 필요는 없다.

이것은 또한 영국과 미국의 교육철학과 교육제도의 차이를 반영한다. 영국과 유럽은 학교에서 미리 정해진 교과과정을 따르기를 요구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과정을 선택하여 스스로 배우고 원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하며 학교는 그 결과를 평가하는 교육 전통을 갖고 있다. 반면 미국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미리 규정하여 그 과정을 밟도록 하는 실증주의적 교육방법과 전통을 갖는다. 미국식 인증과 영국식 인준은 이러한 유럽과 미국의 교육철학과 전통의 차이를 반영한다.

2) 단일과정 인증과 단계별 인증

미국과 영국의 인증제도는 단일과정 인증과 단계별 인증이라는 차이가 있다. 영국은 건축학 교육과정이 파트 1, 2, 3으로 나누어져 있고 인증은 각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즉, 각 단계마다 분명한 교육목표가 있으며, 단계별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한다. 예를 들면 Part 1을 인증받은 학교가 Part 2와 Part 3을 인증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Part 1과 Part 2의 인증된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도 Part 3을 인증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인증된 Part 1, 2, 3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물론 인증된 프로그램간의 상호이동성이 보장된다.

미국의 경우는 5년 학사과정(B. Arch)이든 2년 또는 3년의 석사과정(M. Arch)이든 단일 건축전문학위과정의 인증을 실시한다. 4+2제의 경우와 같이 비전문학위과정인 학부와 전문학위의 대학원과정이 같이 있는 경우 학부와 대학원의 연속된 교과과정을 평가하지만 단계별 인증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 나라의 건축학교육 과정이 단계별인가 아니면 하나의 연속된 과정인가 하는 건축학 교육의 시스템과 관련된다. 역사적으로 건축학교육은 연속된 과정에서 단계별로 선발 또는 탈락되면서 그 일부만이 최종졸업에 이르는 필터링 업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에폴 데 보자르의 교육은 그 대표적 예이다. 현재도 건축학 교육 과정은 대개 중간단계에서 진로선택의 유연성을 갖는다. 유럽의 디플롬 과정도 전제적으로는 연속된 과정이나 2+2+2 또는 1+4, 2+3 등 교육의 단계를 두어 중간에서의 진로선택의 기회를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Part 1, 2, 3는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건축교육은 최초에 대학의 4년 과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계별 인증의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현행 학부 5년제도 입학에서 졸업까지 중간탈락을 전제하지 않는 연속적 과정이다. 그러나 나중에 대학원의 전문학위과정이 생기면서 단계별로 연속성이 없는 두개의 전문학위를 인증하는 다소 혼란스런 체제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후에 발전된 대학원중심의 4+2 또는 4+(3+)의 과정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분명한 교육의 단계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 필터링 업 시스템이 작동한다.

3.5.5. 한국 건축학교육 인증방법론 설정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건축사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학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건축시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시작된 건축학 교육 인증제를 한국에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외 인증제도 방식을 분석한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건축학교육인증방법론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한국의 건축학 교육 인증 목적

한국의 경우 그 동안 건축학교육은 전문직으로서 수준 높은 건축사를 양성한다는 분명한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건축교육의 중심인 설계교육의 전통과 규범, 방법론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건축학 교육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

으며 전문직으로서 건축사의 위상도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한국건축교육의 인증은 세계화와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건축전문교육의 수준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전문직으로서의 건축가의 위상정립에 공헌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교육 인증은 건축전문지식의 내용을 향상하고 전문가로서 건축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의 설정이 있어야 한다.

한 사회에서 전문직의 위상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감당하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역할에 의해 사회로부터 부여된다. 따라서 건축학 교육은 결국 우리의 현실적 문제에 건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건축전문교육인증의 다음과 같은 건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특히 강조해야 한다.

- 국제수준의 우수한 건축설계능력과 건설과정의 문제해결능력
- 전문직의 윤리
-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 도시의 구성과 건축설계를 함께 이해하는 능력
- 공간문제의 조정자 해결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지
- 실내, 조경, 도시 등 유관분야의 설계 및 문제해결 능력

이러한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는 각 학교의 자율적 영역에 속하지만 지금까지 건축전문교육이 분명히 정립되어오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마다의 프로그램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권장하기에 앞서 건축학 교육의 목적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기준, 교육과정, 방법을 어느 정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각 학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자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 자신만의 창의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평가의 방식: 인준과 인증

먼저 인준과 인증의 방법 중 어느 것이 한국의 인증시스템에 더 적합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건축전문직의 성립 역사가 미약하고 전문직능단체보다는 학교를 통해 건축전문직이 주도되어 왔으므로 영국식 인준의 방식을 채택하기는 어렵다. 영국식 인준은 오랜 전문직의 역사를 통해 축적된 전통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직의 전통이 미약한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대학의 학문적 틀에 따라 건축교육의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지표화, 계량화하고 교육내용을 평가함으로써 그 수준을 향상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 교육을 사회적으로 계몽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의 교육제도와 문화가 유럽식보다는 미국식 실증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더 설득력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건축교육의 내용을 지나치게 규정짓게 해서 안 된다. 객관적 최소기준의 바탕 위에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축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인증의 체제: 단일과정 인증과 단계별 인증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인증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100여개가 넘는 건축학교에서 건축교육을 해왔으며, 2년, 3년, 4년, 5년, 대학원 과정의 다양한 건축교육과정이 존재한다. 건축교육인증제 도입의 목적이 건축이 전문직으로서 요구되는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건축전문직의 위상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 있다면 이것은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향한 건축계 전체의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는 많은 학교들과 학제를 고려하여 이들이 건축교육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인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건축학 교육의 과정이 필터링 업 프로세스를 전제로 하는 단계별 교육과정임을 고려할 때는 인증을 단계별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또 건축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건축실무의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도 건축교육을 단계화하는 것은 유리하다. (1992 Bulton Report에서는 Part 1을 마친 학생이 반드시 Part 2로 진입하지 않더라도 건축설계가 아닌 다양한 유관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을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먼저 단계별 교육과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즉, 1단계의 건축기초교육과 2단계의 전문심화교육의 목표와 성과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학 교육의 단계를 둘 또는 셋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의 교육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는 데는 많은 연구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건축교육현실 속에서 인증제를 실행하는 데는 미국과 같은 단일과정의 인증방식이 효율적이며, 다만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4) 인증방법론에 대한 방향설정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교육제도와 문화 그리고 미약한 건축전문직의 역사를 고려할 때 우리의 현실에 맞는 건축교육인증의 방식은 미국의 인증제와 같이 교육 및 시설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설정한 후 항목별로 평가하는 계량화된 인증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지나치게 교육의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개별 건축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을 권장하여 건축담론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이것은 건축이 변화하는 시대적 여건에 적응하며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위상을 유지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많은 건축학교와 다양한 건축교육과정이 이미 존재하는 한국의 건축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건축학 교육을 단일과정으로 인증하는 것보다는 단계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건축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건축학 교육의 단계별 과정에 대한 목표와 평가지표 설정이라는 선결과제의 해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행의 어려움이 있고 운영상의 혼란도 예상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단일과정의 인증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단계별 인증의 방식은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3.6. 인증 내용 및 기준 설정

건축학교육의 인증은 교육 방법의 평가와 함께 졸업생이 결과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의 평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이 인증을 위해 준비하여야 할 자료와 인증을 위한 현장 실사의 내용과 형식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졸업생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열거한 학생수행평가기준(student performance criteria)은 개별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성과를 평가하는 기본 조건이다.

3.6.1. 인증 내용

“건축교육은 두 가지 기본 목적을 가진다: 창조적이고 윤리적으로 건강하고 사려 깊고 자격을 갖춘 전문적 설계인/건설인을 길러낸다; 지적으로 성숙하고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훌륭한 세계시민을 길러낸다.” (유네스코, 세계건축사연맹 헌장, 2001.6)

유네스코-세계건축사연맹 헌장은 건축사의 교육을 위한 정확한 틀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 바, 건축사는 새로운 세기에 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문화적 유산의 틀 속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자기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학교육은 건축이 지닌 여러 차원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각 건축프로그램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확고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제적 건축학교육의 맥락에서 각각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소속대학교, 학생, 건축사 자격, 전문분야 및 사회와의 관계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개별 프로그램들은 각 대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설립목표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러한 관점들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소속대학교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소속된 대학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또한 소속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의 교수진 채용 및 운용기준과 학생선발에 대한 기준
- 소속대학교 내 다른 프로그램과의 상호관계

- 소속대학교 내 해당 프로그램의 학생, 교수진, 교직원들의 학교행정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정도
- 소속대학교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체계

2) 건축학교육과 학생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실무를 하는 동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 독려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상호 협력하는 방식의 훈련
- 학생들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
- 국내외의 실무 및 다양한 관련분야에의 참여 가능성

3) 건축학교육과 건축사 자격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인턴쉽 및 건축사 자격 취득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턴쉽 기회부여 방안
- 프로그램과 졸업 이후의 계속교육 방안
- 전문가 윤리강령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 지난 실사 이후 졸업생 중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의 비율

4) 건축학교육과 전문분야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문화적 환경, 다양한 건축주와 그에 따른 법규적 대응, 확대되는 지식기반 등의 맥락 속에서 변화하는 역할에 대해 적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과 실무전문가와의 교류
- 계속교육의 필요성 인지
- 실무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협력 작업에 대한 인식
- 관련분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와 존중
- 건축가의 책임과 건축주, 공공, 기업간의 상충되는 이해의 조정역할 습득
- 성실한 전문직수행을 위한 윤리의식 배양

5) 건축학교육과 사회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사회 및 환경적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건축과 도시 설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조환경에 대한 다양한 집단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협의 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

-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본 건조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의 윤리적 의미 이해
- 전문직과 공공서비스를 통한 시민과의 연계의식의 배양

3.6.2. 인증 기준

학생수행평가기준은 학생들이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획득하여야 하는 성취 기준으로서 건축학교육 인증을 위한 교육 내용의 기본 틀이 된다. 학생수행평가기준은 교과목의 내용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행해 내는 성능에 관한 평가 기준이다. 따라서 교과목개요, 강의계획서, 수업시간에 배포한 자료, 강의내용 뿐만 아니라 시험결과, 스튜디오 과제의 결과물도 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학생수행평가기준은 커뮤니케이션, 문화적 맥락, 설계, 기술, 실무에 관한 5개 영역에 걸쳐 3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기준은 39개 항목별로 요구되는 학생들의 수행능력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한다’, ‘이해한다’, ‘할 수 있다’의 세 단계 중 하나에 속한다.

- 인지한다 : 정의, 개념, 법칙, 방법, 과정, 환경 등을 포함하는 특정 정보에 익숙하다. 학생들은 문장으로 구사하거나 요약할 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해낸다.
- 이해한다 : 정보의 흡수와 이해. 학생들은 해당 정보를 다른 자료에 관련시킬 능력이나 내포된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도 정확하게 문장으로 구사하거나 요약해 낸다.
- 할수 있다 : 구체적 정보를 업무 완수에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학생들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여 특정문제의 해결에 적용한다.

학생 수행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인증의 기본 조건이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모든 교직원과 신입생에게 학생 수행 평가기준을 배포해야 한다. 영역별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커뮤니케이션

01. 상황과 상대에 맞추어 건축적 아이디어를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적절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02. 각종 건축도서 및 보고서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적절하게 발표할 수 있다.
03. 건축행위에 관련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협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법론 및 지도력에 대해서 인지한다.

- 04. 건축적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05. 사진 모형 등 미디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설계에 연결시킬 수 있다.
- 06.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정보의 이용과 관리, 이미지의 표현, 설계과정에 이용할 수 있다.

2) 문화적 맥락(역사/행태/환경)

- 07. 건축과 과학 및 예술의 관계를 이해한다.
- 08. 세계의 건축 역사와 전통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국가 및 지역의 전통성을 이해한다.
- 09. 건축이 지닌 역사적, 사회적, 지역적, 정책적 상관관계 및 영향을 공시적, 통시적으로 이해한다.
- 10. 역사적 선례들을 비평적 시각으로 건축적 논의에 이용할 수 있으며, 건물 설계나 단지 계획, 도시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 11.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이 드러내는 가치 및 관습과 환경과의 상호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 12. 물리적 환경과 인간 행동간의 상호관계를 밝혀주는 이론과 방법을 이해한다.
- 13. 환경적 맥락을 다루는 이론과 원리 그리고 환경의 재생가능성을 이해하여 지속가능한 건축으로 설계할 수 있다.

3) 설계

- 14. 건축 및 도시설계의 기초를 이루는 2차원과 3차원 공간 및 형태 질서의 기본 원리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것을 건축적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다.
- 15. 설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 16. 특정대지의 자연적, 환경적, 기후적 맥락과 제한조건을 적절히 해석하여 설계에 통합할 수 있다.
- 17. 프로젝트에 주어지는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조건에서 설계개념을 추출하여 체계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 18. 설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완결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 19. 건물 프로그램을 충족할 수 있도록 건물재료, 구성부재, 구법 등을 평가, 선정, 배열, 구체화하여 설계에 통합할 수 있다.
- 20. 공사비용이나 건축법규의 제약 조건 내에서 건물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 21. 제안하는 설계에 대해 심의와 심사, 시공의 목적에 맞게 기술적으로 정확한 설명과 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2. 증축, 개축, 보수 등의 기존환경을 변경하는 문제를 다양하게 검토 및 판단하고 설계할 수 있다.

23. 개인의 재능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역할을 인지하고 책임을 맡을 수 있으며 설계팀 혹은 기타 다른 상황에서 일원으로 작업할 때 다른 학생들과 협력할 수 있다.

4) 기술

24. 구조에 관한 기초이론과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이해한다.
25. 다양한 구조시스템의 발전과 한계를 분석하고 현대적 구조시스템의 구성을 이해한다.
26. 환경조절을 위한 지역의 전통적 방법을 이해한다.
27. 조명, 음향, 환경조절, 에너지 관리 등을 포함한 환경 시스템에 관한 기본 원리 및 성능 평가방법을 이해한다.
28. 건물의 외피설계에 관한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29. 기계, 전기, 배관, 통신, 보안, 방재, 수직이동 장치 등의 건물 설비 시스템 선정과 설계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30. 시공재료, 구성부재, 조립부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데에 관련된 원리, 관습, 규격, 적용, 제한 등을 이해한다.
31. 건설관리에 관한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32. 환경 재생 가능성과 건축 폐기물의 유해성 및 규제 방식을 이해한다.
33. 지역적으로 취득 가능한 물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시공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다.

5) 실무

34. 건축실무에 적용되는 사무소 조직, 사업계획, 마케팅, 협상, 재정관리, 지도력 등의 기본원칙들을 인지한다.
35.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설계, 본설계 및 계약에 따른 행정적 업무, 설계관련 분야의 의사결정과 조정, 시공, 공사 감리 및 거주후 평가(POE), 시설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에서 건축사의 역할을 이해한다.
36.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데 따른 건축재정, 건물의 경제성, 시공비용 조절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인지한다.
37.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들에 상응하는 용역 계약 양식과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전문용역을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서유형을 인지한다.
38. 공중보건과 공공의 안전 및 복지, 재산권, 건축법규, 장애자의 접근 편의, 기타 설계, 시공,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건축의 제반 관련법규 조항들과 이에 대한 건축사의 법적 책임을 인지한다.
39. 건축주와 사회에 대한 건축사의 책임을 인지하고, 전문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이해한다.

3.7. 인증 절차연구

건축학 전문교육이 전국의 70여개 대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면서 건축학교육을 시행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건축학교육 인증을 실시하는 입장에서 인증실사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준비나 축적된 경험이 일천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칭)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수행하는 건축학교육인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3.7.1. 인증절차 개관

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증실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인증원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인증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실사단이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이사회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실사단은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실사 일정 및 실사단 구성에 대해 프로그램 측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실사단은 일정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실사가 끝난 뒤 프로그램 측은 실사단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실사단은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보고서를 실사단원들의 최종 협의를 거쳐 완성한 뒤 인증여부 및 인증조건을 결정한 대외비 문서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인증여부와 인증조건에 대한 결정을 프로그램 측에 통보한다. 프로그램측은 그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3.7.2. 인증 신청

인증 신청은 학부의 경우 독립된 5년제 건축학 프로그램, 대학원의 경우 2년제 이상의 독립된 건축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인증 대상 프로그램 전체를 이수한 졸업생이 1회 이상 있어야 인증 실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내에서는 인증 후보자격제도를 만들어 신설교과과정이 끝나기 전에 인증 후보 자격을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인증후보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만이 인증실사를 신청할 수 있다. 후보자격 심사 신청은 프로그램의 개시 이후 학부의 경우 3년 이상, 대학원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그 절차는 후보자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뒤 후보자격 심사 신청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후보자격 심사 신청 접수 후속 조치는 후보자격 신청 및 승인여부를 대외비로 처리한다. 이러한 후보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통해 학교별로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 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3.7.3. 자체평가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는 프로그램 측이 현장 실사를 희망하는 학기 이전에 인증원에 제출하는

자료로 현장실사 업무 시작 전에 실사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준비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이다. 그 내용은 프로그램의 교육여건 및 자원, 전반적 교육환경을 기술한다.

자체평가보고서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에서 프로그램의 개요는 소속대학교의 개요와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및 교육목표, 특성 연혁 및 향후 발전계획 등을 기술할 수 있다.

지난 실사에 대한 대응은 지난 실사에서 지적 받은 프로그램의 부족한 점을 체계적으로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응내용을 기술한다. 또한 인증원의 규준변화에 대한 대응내용을 포함한다.

건축학교육의 주요 관점에 대한 대응은 건축학교육과 소속대학교, 건축학교육과 학생, 건축학교육과 건축사 자격, 건축학교육과 전문분야, 건축학교육과 사회라는 5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의 학교 내에서의 위상을 알리고 그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들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의 설립목표와 건축사 및 전문 분야와의 연계성,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보여줄 수 있으며 주요 관점이 그 범위를 점차 넓혀 가는 특성을 지닌다. 그리하여 프로그램의 자체평가 과정, 세부계획 내용, 설립목표와 교육의 구체적 상관성, 프로그램의 특징 및 장점 소개 등을 다룰 수 있다.

나머지 내용은 학생 수행평가기준, 학생 정보, 인적 자원, 물리적 자원, 정보 자원, 재정 자원, 연구 활동 및 부록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를 신청한 프로그램의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이사회의 심사는 승인, 조건부 승인과 보완요청, 거부 등으로 구분된다. 승인의 경우는 실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완요청을 할 경우 1개월 이내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 실사단은 거부 결정을 통보한 뒤 해당 프로그램은 2년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3.7.4. 실사단 구성

실사단 구성과 운영의 문제는 인증 전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으로 엄정한 내부 기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국제 건축교육 인증 모의실사 세미나에 참석한 해외 자문단의 자문내용에서도 반복적으로 거론된 핵심적 부분이다. 인증의 전 과정에서 현장실사 절차가 실사단의 판단에 좌우되는 비중이 가장 크므로 실사경험의 축적 및 실사과정의 객관적 타당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 실사단의 현장실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의 유지 및 관리 등이 실사 전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학벌, 지역 등의 특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여건에서 정실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함을 확보하는 방안은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안하여야 할 부분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300~400명 정도의 실사단 풀이 가동되며 이들의 업무는 모두 무보수 자원봉사가 된다. 또한 이들은 2년 임기로 전체 인원의 1/3 가량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들의 지금까지의 실사 경험을 통해 볼 때 이사회의 이사가 실사

단의 일원이 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인증원의 이사는 실사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실사단 후보군의 전체 규모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선정 방식은 매해 초 건축단체, 건축학교육 단체, 학생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을 토대로 구성된다. 그들은 최소한 4년간은 실사단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실사단 구성은 건축 실무계와 건축교육계에서 골고루 추천된 인사 5명으로 구성된다. 실사단이 구성되면 이 명단을 프로그램 측에 보내어 프로그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이 없는지 검토한 뒤 프로그램 측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 2명 이내의 실사단원을 교체할 수 있다. 또한 실사업무 경험을 축적하고 실사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실사업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구성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실사단이 확정되면 실사단의 책무를 공지하고 현장실사 준비를 시작한다. 우선 프로그램이 인증원에 제공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한 뒤 검토보고서를 회부한다. 실사단은 실사 일정을 결정하고 실사기간 동안 다루어질 현안을 결정한다.

현장실사가 시작되면 업무는 실사 단계별 여러 그룹-학교 프로그램 행정단위에 따른 교수그룹, 학생그룹, 행정그룹 등-과의 회의,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시설 견학, 학생, 교수작품 전시회 평가, 스튜디오, 강의 및 세미나 참관, 학교 관련기록 검토 등이 포괄적으로 행해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실사 기간은 나라별로 차이가 나며 보통 3-4일이 소요되나 중국의 경우 1.5일이 소요된다. 우리의 경우 최소 3일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정이 진행된 뒤 마무리 회의를 하고 인증 심의와 실사단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3.7.5. 후속조치

실사보고서 초안은 실사기간 중에 작성된다. 최종 실사보고서는 실사 후 30일 이내 실사단의 최종합의를 거친 후 실사단장이 완성하여 전체 실사단원의 서명을 받은 후 기한 내에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실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프로그램 개요, 지난 실사이후 평가에 대한 프로그램의 대응, 건축학 교육의 주요관점에 대한 대응, 교과과정, 학생 수행평가기준의 시행내용, 학생 정보, 인적 자원, 물리적 자원, 정보 자원, 재정 자원, 연구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부록에 실사단의 명부, 실사와 관계된 모든 현안의 서술, 실사단 서명, 인증기간에 대한 실사단의 서명이 포함된 대외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이와는 별도로 실사가 마무리되면 프로그램 측에서 실사단에 대한 업무 평가를 공식적으로 행한다. 이는 실사단의 실사수행에 대한 논평, 준비정도, 실사수준, 공정성, 자료검토의 철저함 등의 실사단의 실사수행에 대한 평가와 인증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인증과정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등을 기술한다. 이같이 현장실사에 대한 경험을 기술하는 것은 프로그램 측의 차기 실사에 대한 대비뿐만 인증원과 실사단의 경험축적과 미비점 보완을 위한 중요한 장치가 된다.

실사가 종료되면 실사단원은 비용 상환 청구서식을 작성하여 교통비, 식사비, 숙박비 등의 비용에 대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 심사 결과는 실사단이 실사보고서와 함께 대외비 문서로 인증원에 전달한다. 인증 결정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실사단보고서, 프로그램이 제공한 모든 자료를 고려하여 인증 기간을 결정하는 바, 이는 프로그램 측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종류는 5년 유효기간 인증, 조건부 2년 인증¹⁾, 인증의 일시적 정지, 인증거부 등으로 구분된다.

실사인증 결정이 인증의 일시적 정지나. 인증 거부일 경우 프로그램은 결정이 나온 뒤 15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원의 이사진을 제외하고 중재위원회가 구성되어 청문회를 소집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중재업무를 진행한다. 이 모든 절차는 100일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하고 이에서 소요된 직접경비는 프로그램 측이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실사 자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사 절차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충분히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하다. 인증을 규정하는 규정집의 내용보다 그것을 제대로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8. 인증 주체

3.8.1. 인증원 설립방안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가칭, 이하 인증원으로 칭함)은 건축학 전문학위 교육프로그램의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교육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인증하는 주체가 된다. 본 장에서는 인증원의 설립을 위한 과정과 인증원의 구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에서 인증원 설립에 관련하여 수행된 기존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로 하며, 동시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국형 인증 기준 및 절차의 전례가 되었던 미국 NAAB와의 비교도 같이 수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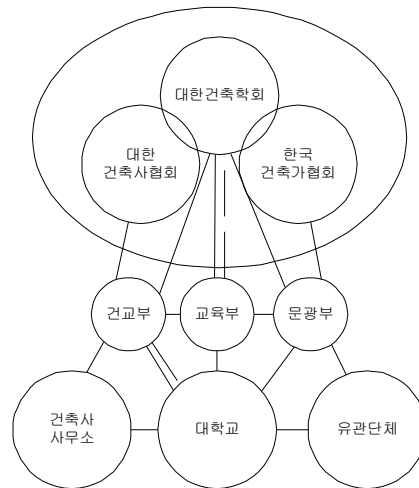
1) 기존 연구결과 분석 및 미국 NAAB와의 비교

2000년 3월에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연구기관: 대한건축학회)에서 제안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 및 구성 방안을 부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예를 보면 인증거부의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으나 조건부 인증의 경우 프로그램 측의 부족사항보다 프로그램의 외적 여건들, 학교의 행정적, 재정적 여타 지원이 부족하여 프로그램의 상황이 힘들 때 학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하여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증원의 설립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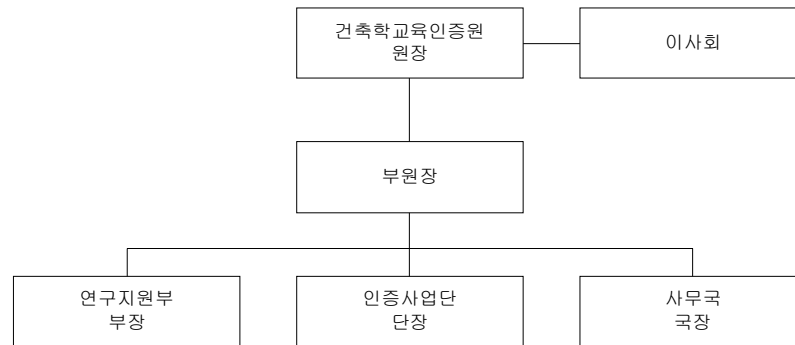
- (1)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가협회 등 3단체가 공히 합동하고 협력하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가칭)”을 독립기구(법인체)로 설립한다.
- (2) 건축실무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건축교육의 주무부서인 교육부, 그리고 문화관광부 등 3개 행정부서로부터 인증원 설립에 관한 합리적인 조정과 지원을 받는다.
- (3) 대학 및 대학교, 건축사 사무소, 산업체 및 유관단체 혹은 개인 등 모든 인증대상은 자발적으로 교육인증에 참여함으로써 인증을 보장해 주는 인증원의 회원이 됨과 동시에 인증주체가 된다.



인증원의 조직

인증원은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가 있고 집행기구로서 인증원장 산하에 평가인증사업단, 건축학교육 연구지원부, 사무국 등 3개 부서를 둔다. 평가인증

사업단은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의 평가인증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교육연구지원부는 건축학교육인증 관련 연구개발과 인증지원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은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인증원의 재정

인증원의 참여회원(건축사사무소, 산업체, 3단체 등)의 회비와 건축대학의 인증수수료를 기본 수입으로 하고, 기금, 과실금,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보충한다. 인증원의 인증을 통한 건축교육의 획기적인 내실화가 산업체에 재교육경비를 절약해주고 생산성과 경쟁성을 높여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수익자 부담의 측면에서 인증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산업체가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교육부의 교육 내실화 업무를 인증원이 대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도 일정부분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참여범위

건교부, 교육부, 문광부 등 정부 당국은 인증원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이사로서 참여한다.

위 2000년의 연구에서는 이른바 건축 3단체를 인증원의 설립주체로 하고, 유관 행정기관인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에 인증원 설립의 지원 및 조정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운영재원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을 미국 NAAB의 구성 및 운영 방식과 비교해볼 수 있다. 우선 인증원의 주체를 보면 NAAB과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아닌 순수 민간단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단지, NAAB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IA :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건축학교연합(ACSA :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Architecture), 건축사등록위원회

(NCARB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그리고 미국건축학생회 (AIAS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ure Student)라는 건축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2000년 연구에서 제안한 안에서는 그 구성을 한국적 현실에 맞추어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의 세 단체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는 건축학교의 연합체나 건축학생의 연합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건축사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건축과 관련하여 가장 규모가 크고 활동이 활발한 세 단체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구성주체로 삼은 것이라 판단된다.

NAAB는 이사회와 실무자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며, AIA, ACSA, NCARB에서 각 3명씩, AIAS에서 2명, 그리고 건축학자 1명,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반인 1명이 임명된다. 그리고 실무자는 집행이사 1명과 인증담당자, 재정담당자, 대외관련담당자 각 1명씩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전반적으로 아주 소규모의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00년 연구에서는 인증원장 및 부원장 각 1명, 이사 30명, 감사 1명이 있고, 연구지원부, 인증사업단, 사무국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규모나 조직이 NAAB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판단이 든다.

NAAB의 재원은 주로 이를 구성하고 있는 4개 단체의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에 더해 매년 인증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인증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전체 수입은 2002년도의 경우 약 77만불 (한화로 약 9억원) 정도였으며, AIA, ACSA, NCARB에서 각각 19만불, 그리고 AIAS에서 1만2천불을 부담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인증받는 프로그램은 약 2천불씩을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실사단의 항공료 등 인증실비가 추가된다).

이에 비해 2000년 연구에서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재원을 ‘회비’의 개념으로 보고, 인증원의 회원인 3단체, 건축사무소, 산업체 등이 회비를 납부하며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의 인증수수료(프로그램당 320만원)가 더해진다. 여기서 한가지 특이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매년 2천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에서는 각기 3억원씩의 기금을 받아 그 과실금을 하나의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제안된 총예산은 첫째 2개 프로그램의 시범인증만을 전제로 하여 약 3억8천만원을 책정해 놓았고, 이 액수 중 3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100만원 정도이다. 각 단체당 100만원이라는 부담금액은 비현실적으로 적다고 판단이 되며, 정부기관의 기금출연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2) 기타 국가의 인증원 분석

미국의 NAAB 뿐만 아니라 UIA, 영국, 중국의 인증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같이 정리될 수 있다.

	UIA	미국	영국	중국
구성	- UNESCO-UIA 인증위원회 (57위원) 17명의 이사회 위원(조정위원회 7명과 각 지역위원회의 공동의장 10명)과 지역위원회의원 40명으로 구성 - 이사회(17명) 공동의장 2명, 전반기 1명, 그 이외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4명 과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10명으로 구성됨. - 지역위원회 각 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NAAB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13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의사결정 및 정책형성 기구로서, 일반학자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반인 그리고 ACSA 3인, AIA 3인, AIAS 2인, NCARB 3인을 포함한다.	RIBA 교육위원회가 현재 국제인증이나 국내인증패널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RIBA인증위원회에 임명한다. RIBA의 인증위원회 위원은 RIBA의 회원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국제인증패널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전국대학교건축학전공교육평가위원회는 전국대학교 건축학 전공지도위원회와 중국건축학회의 추천을 근거로 건설부로부터 임명되어 구성된다. 위원은 모두 15명에서 17명 국가건축행정부 1인, 교육행정부 1인, 중국건축학회 1인, 건축교육전문가 6-7명, 유명한 건축가 6-7명
직제		3년 임기의 두 명의 공무원이사 1년임기의 집행이사가 ACSA, AIA, NCARB에서 최소 1명씩 포함되도록 선출되고 이들은 1년 동안 의장, 의장당선자, 비서, 회계담당자의 임무를 수행	위원장과 위원	주임위원 1명 부주임위원 2명 비서장 1명 사무기구는 평가위원회 사무처이며 일상사무는 비서장이 주관한다.
임기		ACSA, AIA, NCARB는 1년간격으로 교체되는 3년 임기의 3명의 이사를 임명하고 AIAS에선 2년 임기의 1년단위로 엇바뀌는 2명의 이사를 임명	위원은 보통 3년 임기이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한 번 임기는 4년이고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재원	UNESCO가 임명한 정규위원의 경비는 UNESCO가 부담하고 그 외의 인정/인준에 필요한 정당한 UNESCO-UIA인준기구의 경비는 이를 모두 인준 신청자가 부담한다. 장래의 경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스폰서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NAAB의 기금은 AIAS의 일부참여와 더불어 ACSA, AIA, NCARB에서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사회와 실사단구성원은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으며 소요경비는 추후 청구하게 된다.		평가를 신청한 학교가 납부하는 신청비와 평가비, 건축부와 사회 각계의 출자 원조

비고		*인증패널의 구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 국제인증패널은 교육위원회에서 RIBA회원중에서 임명하며 1년단위로 최대 5년까지. 실무에서 은퇴한 회원은 국제패널이 될 수 없으며 국내패널에서 3년이상 활동한 후 국제패널이 될 수 있다. 5년동안 패널 구성원으로 봉사한 사람은 원로패널구성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 대개 어떤 조직이든지 구성원의 자격을 한명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	평가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축학 교육자와 건축가를 초빙하여 시찰, 감독, 지도, 자문 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외국 학자를 초청할 수도 있다.
----	--	---	---

3.8.2.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방안 제안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 및 국외 인증원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설립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인증기관의 목적

(가칭)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Korean Architectural Accreditation Board-이하 인증원)의 목적은 건축학교육의 내실을 유도하는 건축학교육인증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건축학교육의 전문화와 국제화에 기여하고 건축학전문학위제를 정착하는 것이다.

2) 조직의 구성

■ 구성의 전제

인증원의 구성은 최소한의 규모를 전제로 한다. 이는 과도한 인적, 물적자원 소요를 줄여 인증원 초창기 운용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인증원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일반 시민과 NGO를 포함한 좀 더 폭 넓은 구성원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사회

인증원의 핵심 구성원은 이사회가 된다. 이사회는 건축학 전문교육 인증에 관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기구로서 14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건축학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이

해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5명의 건축학 교육자, 2명의 관련분야 교육자, 5명의 실무 건축사,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임명한 담당 공무원 1명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임명한 담당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7명의 교육자와 5명의 건축사는 2003년 결성된 FIKA(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에서 추천된 인사로 구성하며, 공무원 2인은 각 기관에서 임명하도록 한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2년간 무보수로 봉직하는 것으로 한다. 이사회는 1명의 위원장과 1명의 간사로 구성되는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인증원장을 겸하도록 한다.

■ 사무국

인증원의 사무기구로서 인증원 사무국을 둔다. 인증원 사무국은 이사회의 간사가 총괄한다. 사무국에는 실무요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의 인건비는 인증원의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 인증 심사단

인증 심사단(이하 심사단)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개별 인증이 실시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심사단은 이사회에 결정에 의해 구성하며, 5명으로 구성한다. 인증원 초창기에는 인증심사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 2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경험이 연결되도록 하였으나, 추후에는 이사 1인만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머지 4인의 심사단원은 일정한 전국적 풀(pool)을 마련한 뒤, 여기서 지역과 학연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단원을 이사회에서 차출하도록 한다. 이 풀은 건축학교육자와 실무건축사, 관련기관 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한다.

심사단은 보수를 받지 않으며, 실사 중 발생하는 직접경비는 인증원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3) 인증기구 운영

■ 재원

인증원의 재원은 평가를 신청한 학교가 납부하는 신청비와 평가비,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정부예산지원 및 인증원 운영에 참여하는 각 건축 관련단체(FIKA 및 그 외 인증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인증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의 회비로 이루어진다. 재원의 사용방법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이사회

이사회 위원장은 일년에 한번씩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임시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의 결정은 반드시 전체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는 (1)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실사단 구성 및 프로그램의 각종 인증 결정), (2) 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사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학생 수행평가기준의 마련

학생 수행평가기준은 인증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본 자료이다. 이사회는 건축학 교육의 인증에 필요한 수행평가기준을 정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인증원 기준의 마련

이사회는 건축학교육의 인증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인증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배포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절차와 방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

③ 인증 대상 프로그램과의 연락

이사회는 인증 받기 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심사하고, 신청을 접수한다. 이사회는 실사 계획과 일정을 마련하고, 실사단을 구성하여 파견한다. 실사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사 후속조치를 프로그램에 전달한다.

3.8.3. 인증기구 규정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의해 인증기구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증기구의 목적

(가칭)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Korean Architectural Accreditation Board-이하 인증원)은 건축학교육의 내실을 유도하는 건축학교육인증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건축학교육의 전문화와 국제화에 기여하고 건축학전문학위제를 정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조직의 구성

■ 이사회

인증원은 건축학 전문교육 인증에 관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기구로서 14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건축학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5명의 건축학 교육자, 2명의 관련분야 교육자, 5명의 실무 건축사,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임명한 담당 공무원 1명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임명한 담당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한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사는 2년간 무보수로 봉직한다. 이사회는 1명의 위원장과 1명의 간사로 구성되는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인증원장을 겸한다.

■ 사무국

인증원의 사무기구로서 인증원 사무국을 둔다. 인증원 사무국은 이사회의 간사가 총괄한다.

■ 인증 심사단

인증 심사단(이하 심사단)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 조직으로서 이사회가 구성한다. 심사단은 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단은 경비 이외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

3) 인증기구 운영

■ 재원

인증원의 재원은 평가를 신청한 학교가 납부하는 신청비와 평가비,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정부예산지원 및 인증원 운영에 참여하는 각 건축 관련단체의 회비로 이루어진다. 재원의 사용방법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이사회

이사회 위원장은 일년에 한번씩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임시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의 결정은 반드시 전체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 (심사단 구성 및 프로그램의 각종 인증 결정)
- ② 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④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업무

■ 학생 수행평가기준의 마련

학생 수행평가기준은 인증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본 자료이다. 이사회는 건축학 교육의 인증에 필요한 수행평가기준을 정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인증원 기준의 마련

이사회는 건축학교육의 인증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인증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배포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절차와 방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

■ 인증 대상 프로그램과의 연락

이사회는 인증 받기 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심사하고, 신청을 접수한다. 이사회는 실사 계획과 일정을 마련하고, 실사단을 구성하여 파견한다. 실사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사 후속조치를 프로그램에 전달한다.

3.9. 인증절차 타당성 검토

3.9.1. 개요 - 모의실사 및 국제세미나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는 선진국의 경우 오랜 세월을 통해 다듬어온 제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때문에 기준안의 마련과 더불어 현장에 적용될 때, 인증받는 프로그램 측의 준비과정이나 실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팀은 인증실사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영국과 미국, 중국의 인증전문가를 위촉하여 한국형 인증제도 마련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인증과정에 대한 자문을 받으며 실사과정을 배운다는 취지로 합동으로 실사단을 구성, 모의실사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증대상이 되는 5년제 프로그램의 경우 시작한 지 2년이 채 못 되었으므로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인증을 위한 실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학원의 경우 2003년에 출범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5개가 운영되고 있고 졸업생이 나온 프로그램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과정 개설대학들이 5년제인 점을 감안하여 2002년부터 5년제 건축학전공 B.Arch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틀간의 약식 모의실사를 시행하였다. 시간상의 제약과 공립학교라는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2002년 12월에 해당학교에 서신을 띄워 모의 인증실사에 대한 수락여부 의사를 타진한 뒤, 5개월의 준비작업을 거쳐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완료하였다.

■ 한국형 인증기준 마련과 영문화 작업

미국, 영국, 중국의 인증 제도를 분석하고 UIA의 기준을 비교하여 한국형 기준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사전에 해외실사팀의 자문을 받고자 하였다.

■ 한국형 인증기준을 토대로 실사대상학교의 모의 자체평가보고서(영문) 작업

실사대상인 서울시립대학교의 태스크 포스트팀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사 준비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협동연구의 성격을 띠었다.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보고서 목차와 수록내용에 대한 조율이 있었다.

■ 한국형 인증기준내용에 대한 연구팀과 해외실사팀의 회의(2003.6.3)

미리 전달된 한국형 기준과 매뉴얼에 대한 점검과 자문을 위한 3시간의 회의를 가졌다.

■ 한국형 모의실사 시행(2003.6.3-4)

서울시립대학교를 이틀간 방문하여 한국의 건축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증을 위한 현장 확인과 절차에 대한 자문을 하였다.

■ 전국학과장초청 국제세미나(2003.6.5)

전국의 120여개 건축 관련 전공개설 대학의 학과장을 초청하여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과학재단 후원의 국제세미나를 시행하였다.

이는 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한국의 건축3단체(건축학회/건축가협회/건축사협회)의 공동의 노력과 연구팀의 연구결과 발표, 서울시립대의 모의실사를 통하여 본 한국건축교육계의 나아갈 바에 대한 해외실사팀의 조언 및 인증제도 시안에 대한 전국 건축 관련학과의 의견을 청취하는 성격의 자리였다. 연구팀의 경과 보고와 시안마련에 대한발표, 모의실사대상 학교의 경험과 제언, 해외실사팀의 인증에 대한 시각과 한국에 대한 조언 순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질의/응답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연구팀이 마련한 한국형 건축학교육인증제도의 시안으로서의 기준과 절차가 영문판과 더불어 배포되었으며 서울시립대학교의 영문자체평가보고서는 요약본으로 배포되었다.

3.9.2. 모의실사를 위한 대상학교의 준비사항

1) 실사대상과목 선정 및 자료수집

스튜디오작업 결과물 수집 작업 - 학기별 과제별 상, 중, 하로 평가된 프로젝트자료 (모형/도면/패널)

5년제 개설과목과 4년제로 개설중인 과목 중 연속성을 가지게 될 과목 자료

- 수업계획서 / 교수용 수업노트 / 수업시 배부된 유인물 / 시험지 및 답안 / 평가된 과제물

2) 자체평가보고서작성

연구팀이 제시한 기준에 충실한 보고서 작성, 현실적인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실사단이 참조한 대외비 자료와 전국학과장에게 배포된 양식영문보고서로 이원화하여 마련

3) 학생 수행평가기준표에 따른 과목별 증거자료비치

수행평가기준에 따른 해당과목별 증거자료 파일비치
근거가 되는 매트릭스를 실사단 작업실에 비치

4) 설계스튜디오 결과물 전시

학기별, 과제별 결과물을 전시하여 전학년에 걸친 설계교육 전체의 시퀀스를 알림.
개별 전시되지 않은 학생들의 작업은 디지털자료를 프린트하여 파일에 비치함.

5) Enrichment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비치

특강시리즈, 심포지엄, 답사프로그램, 특별공모전 등 프로그램의 정규과정과 함께
병행되는 다양한 Enrichment program에 대한 자료 (결과물/포스터/publication 등)
비치

6) 졸업전시회 연장전시

졸업생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전시회를 모의실사에 맞추어 시행함.

7) 해당학기 스튜디오의 결과물을 복도에 전시

실사단 작업실과 졸업전시회와는 별도로 스튜디오의 진행을 알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설계작업 결과물을 도면과 모형으로 전시함.

8) 전공안내 브로셔 제작

영문을 부분적으로 삽입한 5년제 교과과정에 대한 브로셔와 리플릿 제작

9) 리셉션준비

실사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인증실사 사실을 관련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총장이 초청
하는 리셉션

표 19.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전공 시범실사 스케줄 및 방문 장소

6월 3일	주요내용	장소	참석자	비고
2:00-2:30	주요보직자면담	총장실	총장, 교무처장, 실사단, 실사준비위원회 위원장, 건축학전공주임, 해외실사팀 3인	중국 실사 위원은 불참
2:30-3:00	프로그램 교수진 면담	Team Room	실사단 / 건축학 전공교수 전원	
3:00-4:00	프로그램 개요 브리핑	Team Room	실사단 / 건축학 전공교수	
4:00-4:15	Coffee Break	Team Room		
4:15-4:30	수업참관	스튜디오	실사단 / 건축학 전공교수	
4:30-5:00	실사단과 전공학생과의 미팅	강의실		전공교수진 불참
5:00-5:30	학과내 시설물 점검	자료실/암실/모델스코프실/모형공작실/CAD실	실사단 / 건축학 전공주임	
6월 4일	주요내용	장소	참석자	비고
9:00-10:00	Enrichment Program/ 커리큘럼 브리핑 스튜디오관련 브리핑	Team Room	실사단 / 건축학 전공교수	
10:00-10:15	Coffee Break	Team Room		
10:15-12:00	강의과목 review	Team Room	실사단 / 건축학 전공교수	
12:00-1:00	Lunch Box Meeting	Team Room	실사단 / 건축학 전공교수	대학원생 참여 슬라이드쇼(Hyett)
1:00-3:00	스튜디오관련 전시물 설명 및 학생작품 review	Team Room	실사단 / 스튜디오 담당교수	
3:00-3:30	교내시설물 점검	중앙도서관 건축분야 섹션/박물관	실사단 / 건축학 전공주임	
3:15-4:00	졸업작품 전시장 방문	21세기관 국제회의장	실사단 / 스튜디오 담당교수	
4:30-5:00	실사팀 정리회의	21세기관 1층 전자도서관내 회의실	CAASK전원, 해외실사팀	전공교수진 불참
5:00-5:30	실사결과통보	21세기관 1층 소회의실	총장, 교무처장, 실사단, 건축학교수전원	
5:30-6:20	정리회의	21세기관 1층 소회의실	CAASK전원, 해외실사팀 3인, 건축학전공교수전원	
6:30-8:00	Reception (카테일파티)	21세기 관 1층 로비	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도시과학대학장, 건축과동창회장, 건축도시조경학부전공주임, 건도조학부교수, 건축학/건축공학 전공교수, 초빙/겸임교수/강사, 실사단	건축가협회 회장참석

3.9.3. 국제인증전문가와의 협의

1) 회의 개요

일시: 2003. 6. 3. 9:00-12:00

장소: 사당동 건축학회 회의실

참석자: 임창복 / 최재필 / 정진국 / 이상현 / 류전희 / 이정근 / 조성중(FIKA)

Paul Hyett(RIBA) / Kenneth Schwartz(NAAB)

2) 회의 내용

■ 인증제도의 운영에 대한 코멘트

인증제도는 제도 그 자체보다는 운영주체인 사람이 좌우하는 것이므로 위원회가 잘 교육되고 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둘째, 이 시스템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제도도 여러 가지로 운영될 수 있다. 제도를 만드는 것은 첫발자국에 불과하며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문제이다.

■ 인증원 및 실사단의 인적 자원에 대한 코멘트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증원 이사가 실사단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실사단은 수준 높은 실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훈련, 공정성, 균형감이 필수적이다.

실사단에 학생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 인증의 유연성에 대한 코멘트

인증은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기준은 느슨하면서도 타이트해야한다. 결국은 문화적 수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단위로서가 아니라 대학 전체의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인증의 유형으로 집중평가(focused evaluation)도 있다. 6년 인증을 받더라도 3년만에 시설만을 따로 인증받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 현장실사의 투명성에 대한 코멘트

실사단 방문시 학생들과의 만남은 학생대표와의 만남이 아니라 학생전체와의 만남이어야 한다. 이 때에 교수진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교·강사진과의 만남에서는 학장이나 학과장이 배제되어야 한다.

3.9.4. 시범실사를 위한 현장실사 점검표

1) 프로그램 개요브리핑

-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대학의 설립목표와의 연계
-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의 구체성

2) 수업참관

강의실

- 크기, 랜환경, 스크린, 암막, 오디오시설
- 강의내용의 적절성

스튜디오

- 분반규모
- 교수와 학생의 개별지도시간
- 스튜디오의 시설정도
- 스튜디오 운영이 적절한가

3) 학과내 시설물 점검

중앙도서관 / 도서자료실 / 설계평가실(실사단사무실) /
암실 / CAD실 / 모형공작실 / 구조실험동 /
전시실 / 재료 견본실 / 기타시설

4) 인적자원

교수 / 조교 / 행정직 / 대학당국 보직

5) 교육과정

- 교과과정 충실도
- 강의과목 점검

6) 연계프로그램

- 연계프로그램 충실도 (특강 / 현장답사 / 인턴쉽)

7) 실사사무실 게시내용의 적정성

- 프로그램 안내자료

- 교과과정 내용 게시
- 스튜디오 단계별 내용의 적절성
- 스튜디오 결과물 게시
- 스튜디오별 최고 및 최저 통과성적별 게시
- 수행평가별 항목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의 게시여부

8) 전시

- 학생 등의 전시물의 적절성

■ <참고자료: 건축학 프로그램의 국제적 교육기준>

1)인적 자원(Human Resources)

- 학생 : 학생 발달사항 평가
 - 입학정원 및 입학사정 기준
 - 편입학 사정 기준
 - 학생관리 기준(진급, 유급, 졸업사정 기준 등)
- 교수 : 전임교수, 겸임교수비
 - 학생/교수 비율
 - 교수확보율
- 행정 : 행정관리직, 도서사서 등
- 조교 : 실험조교-건축CAD 실, 작업공방 등 최소 2명

2)인적 자원 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 수업외 개발 프로그램
- 연계 프로그램

3)물리적 자원들(Physical Resources)

- 규모의 적정성, 안전성, 접근성 등이 점검대상
- 설계스튜디오
- 건축CAD 실
- 작품전시 및 평가실
- 건축도서실
- 작업공방
- 환경실험실

- 구조실험실
- 사진 암실
- 동아리방

4) 정보 자원들(Information Resources)

- 건축도서관은 NA분류 혹은 Dewey 분류체계에 의한 5000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 도서관의 건축관련 분야 장서의 범위, 지원 인력, 서비스 정도에 대해 평가

5) 재정적 자원(Financial Resources)

- 교내의 타 전문 분야의 재정 상태 및 학교의 지원 현황
- 타 유사한 기관의 프로그램과 비교한 프로그램의 재정 상황,
- 장학금 및 후원금 등

6) 프로그램 행정단위

- 기관의 공인여부
- 프로그램의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의 상대적 자율성 여부

7) 전문 학위와 교과과정

- 과목 개요, 학습목적, 학과목 요구조건, 선수과목, 수업일정 및 강의 계획서
- 교양과정,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
- 과목간의 연계 및 배분

8) 학생수행평가기준

- 학생들이 받은 교육 내용이 수행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게 됨
- 각 과목별 충족시키는 수행평가기준
- 수행평가 기준 항목별

3.9.5. 전국 학과장 초청 국제세미나

일시: 2003. 6. 5. 오후 2시-5시
장소: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

1) 최재필교수(CAASK멤버/서울대 교수)발표요약

■ 개발배경 설명

2002, 건축학교육을 위한 UNESCO/UIA 인증시스템 (22차 베를린 총회)

UIA가 직접 인증 시스템을 운영

국가 인증시스템의 인정

개별 프로그램의 인증

■ 경과 설명

2001-2003, 건축사 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건축학 교육 인증시스템 개발 연구

CAASK (Commission for Architectural Accreditation Study in Korea) 결성

한국과학재단/ 대한건축학회 지원

■ 연구방식 설명

2002, 미국, 영국, 중국 방문하여 인증실사에 직접 참여 또는 인증제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인증원 실무책임자와의 심층 인터뷰 수행

문헌을 통한 각국 인증제도 심층 비교분석 + 문헌 국역(國譯)

한국형 절차 및 기준 개발

참조된 공식 문헌 설명

■ 한국 인증절차 및 기준 설명

처음 시작하는 제도

인증제도의 의미, 운용과정 등에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이 필요

미국 NAAB의 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UIA, 영국 RIBA, 중국 NBAA의 요소를 적절히
가감하여 작성됨

■ 인증기관

명칭: (가칭)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orean Architectural Accreditation Board
(KAAB)

구성 및 재원 : 관계법령에 따른 정부기관의 참여는 필수적

건설교통부 / 교육인적자원부 관련 공무원 포함

인증원의 재원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포함

■ 인증후보자자격제도

새로운 건축학 전문교육 시작에 있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장치로서 신설 교과과정이 끝나기 전이라도 인증『후보』 자격 신청 및 취득을
가능하도록 하는 인증 중간 단계이며 내실 있는 준비과정 진행에 그 목적이 있음.

■ 결 언

한국 건축학교육 인증 절차 및 규준은 하나의 시안(試案) 또는 living document
추후 절차 및 규준 채택 및 인증원 설립을 위한 협의체가 결성되고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전국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책임자/국내외 전문가의 협력으로
신중한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

2) 김성홍 교수(시범실사실시 서울시립대)의 발표요약

■ 시범실사 대상으로 선정된 배경과 경과보고

공립대학이라는 공공성
2002년부터 5년제 시행

교수진 구성의 적절성

■ 서울시립대의 준비과정에 대한 요약

예산편성 및 공간확보
수행평가기준에 따른 교과목 재편성/내용점검
비치 교과목 결정 및 비치자료 준비
영문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실사단 사무실(Team Room)준비

■ 경험을 통한 제언

첫째, 건축학교육인증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과 직능단체와의 공동의 문제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교육연한과 건축사자격시험을 연계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5년제를 시행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건축단체연합과 건교부, 교육인적자원부는 5년제 대학의 졸업생, 4년제 대학의 졸업생, 전문대학 졸업생 등의 교육연한의 차이와 건축사자격기준에 대한 지침과 규준, 경과조치 등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침체에 빠진 건축계의 장래를 위해서는 시급히 교육과 자격제도를 연계시켜야 한다.

둘째, 인증은 교수진이나 교수방법보다는 학생의 수행평가기준(performance criteria)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증은 궁극적으로 대학간의 경쟁과 도태로 연결되는데 한국적 현실에서 공정한 질적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인증원이 설립되는 데는 실험과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본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립대의 해외방문단참여와 같은 과도기를 거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인증의 준비방법과 과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축학회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수행평가기준(2001. 8)은 개략적인 교육목적과 방향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은 각 대학이 특성화 개발해야 할 숙제이다. 예를 들어 우리대학의 경우 도시과 학대학의 특성을 살린 도시건축교육, 현장을 중요시하는 설계교육, 서울의 문화에 기여하는 교육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경우 교육내용과 수행평가기준이 부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질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실사단의 구성성격에 따라 문제점이 대두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장차 인증을 준비해야 하는 5년제 대학으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셋째, 인증은 건축학교육을 전문건축사를 배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실무건축가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립대학인 우리대학의 경우 건축설계 겸임교수의 조건이 비현실적이며, 급여산정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습과목을 적용하여 이론과목의 1/2로 산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는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건축학회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학중 학생들의 인턴쉽 제도 및 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 역시 한국건축단체연합이 논의하여야 할 건축계 전체의 문제이다.

이번 시범실사를 통해 우리대학 교수진은 건축교육의 내용이 공개와 평가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5년제의 내실화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견실한 건축인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사회를 향해 과감히 문을 열어야 하고, 사회는 졸업생들이 전문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 시범실사를 계기로 이러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Paul Hyett (영국 RIBA)의 발표요약

국가차원에서 국제적 맥락에서 인증시스템의 역할과 가치

먼저 국가차원에서는 한국의 건축가라는 전문직에 들어서기 위한 바탕으로서의 교육과 훈련의 기준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건축전문직의 지명도를 가늠하게 하고 증대시키는 의미를 가짐.

이러한 건축서비스 분야의 자격에 관한 국가간 이동성(portability)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가능케 한다.

훈련기간 동안 전공학생들은 국제적 이동가능

졸업생/건축가는 전문직의 수행기간동안 국제적 이동가능

한국의 건축가는 한국에서 국제적 경쟁이 가능

한국내부의 국제규모의 일의 수주가능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이 요구되는 곳에서의 투자

추가적인 의미(가치)

건축실무의 국제적 기준의 상향화

4) Kenneth Schwartz(미국 NAAB)의 발표요약

■ 미국 NAAB에 대한 간단한 소개

개별 학생들에 대한 인증이 아닌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이며 인증받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운영상 여건들과 학생들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B.Arch, M.Arch 학위를 인증한다.

120여개의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1명의 디렉터와 4명의 전담직원이 고용되어 있으며 2인의 학생을 포함한 13명의 위원회 소속 위원이 무보수로 봉직한다.

인증받은 프로그램에서의 교육, 건축가가 되기 위한 인턴수습기간 및 등록에 대하여 공공의 지원이 있다.

■ 인증(Accreditation)이란 무엇인가? 그 목표는 무엇인가?

관련단체간의 관계 : 미국의 NAAB에서의 인증을 위한 ACSA, AIA, NCARB, AIAS
네 단체의 관계는 한국의 AIK, KIRA, KIA에 대응될 수 있다.

■ 인증의 기본 목표

개별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장치

한국의 건축교육에 있어 전반적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장치

국제적 무대에서 신용을 가지고 있는 인정된 시스템의 마련

대학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건축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장치

■ 인증의 방식

원칙Principles: 획일화를 피하면서 기준을 확립한다.

자체평가가 인증의 가장 주요현안이다.

학교마다 다른 프로그램의 설립목표가 초점이 된다.

인증의 과정은 신용과 일관성과 질의 확보가 관건이다.

협력과 상호보완이라는 정신이 기저에 있어야 한다.

절차Process: 원칙에 대한 동의

매뉴얼로서의 절차와 기준 (Conditions and Procedures) 마련

인증절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대학당국관계자/교수진/학생)

단계별 계획의 마련

평가단의 구성

선구적 역할을 하는 시범 프로그램의 역할부여

프로그램의 자체평가

프로세스를 리뷰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적 회의

5) 秦佑國 (중국 청화대학 건축학원 원장, 중국 NBAA 의장)의 서울시립대학교 평가
의견 요약

(불참으로 한양대학교 한동수 교수의 번역과 대독으로 진행)

■ 교과과정

5년간 모두 164학점으로 6개의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부분의 비중은 비교적 적절

하다. 설계과목(Studio)은 2시간을 1학점으로 계산하여 시간이 비교적 많다. 각 과정과 각 학년 설계과목의 내용(부록1)은 비교적 적절하다. 대한건축학회(AIK) 교육위원회의 39개 평가표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Classical to Gothic Architecture”는 필수로 바꿀 것을 권유한다.

설계과목 중 Design V의 “Urban Design & Housing” 이외에 “Urban Design”이라는 제목을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nvironmental Design in Architecture”과목에 건축과 도시소음환경, 건축채광과 조명, 실내공기질량(IAQ), 실내열쾌적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건축학 전공영어독해 과목과 소묘, 스케치, 수채화 등의 선택과목 개설할 것을 권유한다.

■ 교수진

비교적 많은 설계, 학술업적을 가지고 있어 학문수준이 비교적 높으나 전임교수의 양적 증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젊고 외국유학경험을 갖춘 사람의 충원이 요구된다.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는 모두 14명으로 전임교수의 숫자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들의 교학관리와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한건축학회(AIK) 교육위원회는 전임교수와 겸임교수, 시간강사의 최소비율을 규정을 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시설

교학공간의 부족은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서 저학년 설계실에 전용좌석이 필요하며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강연실, 전시공간, 건축재료 전시공간이 요구되고 모형 제작실, 건축과 독서실, 세미나실의 면적이 대단히 작다.

건축전공이 있는 건물도 전용공간으로서 건축학적인 의미와 특색이 요구된다.

전용 건축학도서관이 없고 현재의 2개 열람실은 대학도서관과 학과건물에 나누어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용에 불편하다.

■ 행정관리

현행 행정체계의 위계는 대학교-단과대학-학부-프로그램으로 너무 많다. 건축학 전공은 독립적인 행정, 재정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리하기에 수월하지 않은 일들이 많으며 건축학 전공의 발전에도 불리하다.

중국에서 역사가 비교적 짧은 건축학 전공은 설립 초기 기타 다른 전공과 하나의 과 혹은 단과대학 속에 섞여 있다가 몇 년이 지나면 모두 독립되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중국에는 한 대학의 건축학 전공이 다른 전공과 함께 섞여서 잘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건축학부로의 독립계획은 합당한 조치이다.

■ 국제교류

오늘날 전지구화의 추세 속에서 서울은 국제적인 대도시로 국제교류는 분명히 중요하다. 외국학자와 건축가의 초청강좌, 외국건축 전시회의 개최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문화처나

외국건축학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국제학술세미나의 개최, 외국대학과 학생교류, 국제학생 공모전의 참여유도 등을 제안한다.

6) 질의 및 응답

Q 한국의 건축교육이라는 것이 건축가의 자격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대한 내용 등이 채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및 실무에 관련된 과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는가? 영국과 미국에서 인증제도가 건축가의 자격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인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A (미)- 건축사 시험제도와 인증과정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에 발표한 슬라이드의 네 조직 중에 한 조직이 건축사 시험제도를 다루고 있다.

(영)- 미국에서도 네 조직 사이의 관계가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영국 보다는 원만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영국에서는 여전히 세력다툼이 심하다. 영국의 경우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영국에서는 건축사 등록 등의 관리는 건축사 등록 위원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어떻게 건축가가 자격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건축사 등록 위원회가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고 권한을 가지려 했다. 때문에 정쟁이 일어났으며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다. 오랜 정쟁 후에 얼마 전부터 협조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 RIBA가 건축교육을 관장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시험 자체가 RIBA의 시험이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100개의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관장하고 있다. 미국처럼 협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건축 교육을 위한 물리적인 요건이나 교수진 등을 갖추는데서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A (미)- 인증 받을 교육체계가 장차 추후에 어떤 교육의 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Q 미국 내에서 건축교육 인증을 통과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

미국에서 건축교육 인증을 통과하는 비율이 주(State)별로 편차가 있는가?

사회의 건축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졸업생의 수를 조절하는가?

인증탈락의 비율과 주 원인이 무엇인가?

A (미)- 인증에 탈락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 이유는 대학 본부, 건축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이라는 소비자가 맞물린 시장으로 형성된 관계에서, 그 공공의 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압력, 일정한 수준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력이 있다. 지난 10년간 인증을 박탈당한 학교의 예 중 두 가지 경우가 생각난다.

두 학교는 예산의 문제가 심각하였고, 교수진의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숫자 조절을 하지는 않는다. 2년에 한 프로그램 꼴로 새로 생겨나고 있다. 미국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양한 경로로 (인터넷, 연구, 시장 조사 등) 인증 받은 프로그램과 학교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으며, 기술 교육 위주의 학교에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영)- 영국에서도 인증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드물다. 지난 40년 간 한 학교가 바로 일주일 전에 탈락했다. 그러나 곧 인증을 다시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증 과정이 대화를 통하여 협력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인증과정을 기쁘게 맞이하고, 다음에 또 인증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의 의견과 평가를 받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학교 자체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것이다.

학교들이 RIBA의 인증이 없다면 교과 과정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다. 건축교육이라는 것이 매우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Q 한 학교에 대학원과 5년제 학부가 동시에 있을 때, 인증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가 ?

대학원과 5년제 학부의 인증 과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

5년제 B.Arch 와 M.Arch 과정에 대한 인증에서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는가 ?

그러한 비중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

A (미)- 학부과정과 대학원의 경우 전혀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진행한다. 같은 학교의 두 프로그램에 대하여 한 번의 방문에서 인증을 동시에 진행한다. 많은 경우에 두 과정이 교과 과목 등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년간의 학부 과정과 2년 또는 3년의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두 프로그램이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동시에 평가를 받게 되고, 대부분 같이 인증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과정만 인증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영)- 영국의 경우에 교육과정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3년의 학부 과정, 2년의 대학원 과정, 졸업 후 2년의 시험 자격 획득의 과정이 있다. 영국의 경우에 회사가 정부와 함께 건축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세 과정 모두 학교에서 자격심사를 관장하고 있으며, 건축가로 등록하려면 세 개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 개의 과정 중 하나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5년 후에 RIBA가 만족하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만 재심사를 한다.

Q 1~2년 정도 공학전공이나 공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독립된 5년제 학부과정에 대한 인증 자격이 있는가 ?

학부 과정에서 타 전공을 마치고 건축 대학원에 진학하여 (미국) 3년제 M.Arch를 받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커멘트를 부탁한다.

A (미)- 미국의 경우에 M.Arch 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3년에서 7년까지 다양)

인증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존재는 프로그램의 수행평가 능력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건축의 비전공자가 학부 때와는 다른 건축을 공부하는 것이 건축학 교육에서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5년제 프로그램이 미국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UIA/UNESCO 의 제안에 따르면 5년제 뿐만이 아니라 M.Arch 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5년제 과정은 1~2년 정도 기초 과정과 연계되어 있고, 그 과정의 분야는 공학이나 조경, 순수 예술 등 가능성은 다양하다.

Q 국제적인 상호 교류 시스템이 WTO 로부터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다.

참고로 아시아 건축 연맹은 UIA/UNESCO 의 기준이 WTO 협정의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 자체의 인증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A (영)- 현재 상황이 15세기의 독일의 상황과 비교가 될 것 같다. 독일의 중세 장인제도에서 각 도시의 길드가 다른 지역 출신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시장 보호 정책이 있었다. 그것은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한다. 상호 교류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이 과거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건축가의 교류 등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WTO 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WTO 는 개별 국가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 UIA/UNESCO 는 기준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지만 지휘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진행 과정에서 국가 간의 약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한국과 영국의 건축가를 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의 등록 과정을 존중하고 등록 건축가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인증받은 교육기관을 나온 건축가들이 다른 나라로부터도 인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EU 체제 하에서 나라를 불문하고 모든 건축가들이 어떤 나라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북미 자유시장연맹이 있는 것처럼 태평양 연안에서의 조직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Q 현재 진행되고 있는 CAASK 의 연구에서, 이미 5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

모의실사를 진행하면서 얻게 된 교훈이나 제안 등은 없는가 ?

A (최재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인증원이 생기게 되면 바로 인증을 신청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후보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인증제도가 완성이 되면 후보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그 이후에 곧바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성홍)- RIBA 에서는 모든 학생의 작품을 다 가져다 놓고 인증 심사를 하고, 미국에서는 스튜디오 별로 몇 점을 선택해서 인증 심사를 하고 있다. 어떤 시스템이 적합한지는

국가나 사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여러 가지 기준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5년제가 맞는지 4년제+2년제가 맞는지, 몇 학점을 이수하도록 해야하는지, 교수진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중요한 것은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몫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 한국의 상호 인정에 있어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한국에서 상호간의 기준 인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Q 인증제도 설립 등에 대한 이후 스케줄이 있는가 ?

건축학 교과과정 모형개발에서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에 대한 규정 등이 있는가 ?

A(최재필)- 이후에 누가 시행을 하게 될 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큰 그림이 그려진 상황에서, 또한 FIKA 가 발족한 상황에서, 늦어도 1~2년 안에 인증원이 설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의 협의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전공필수 과목에서 39개의 수행평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선택 과목에서는 다른 이슈나 39개 항목에 대한 것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수도 있다.

- WTO가 UIA/UNESCO에 권한을 위임해서 국제적인 인증 기준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 다만, UIA/UNESCO에서 국제적인 인증 기준에 대한 권한을 WTO에 대하여 요청하고 있다. UIA/UNESCO에서는 자신들이 마련하는 기준이 WTO의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른 외국의 기관에게 우리 건축 교육의 인증을 맡기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빨리 한국의 건축학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다른 나라와의 상호 교류 인정과정에서, 우리의 인증제도를 내세워서, 당당하게 외국과의 협상에 맞서야 할 것이다.

Comment- 후보 인증제도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복수전공자 최소학점 인정제 등은 대학마다 방법이 다르다. 인증원에서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잣대를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침 후보자격제도라는 것은 그러한 기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Q 인증원 설립 등과 관련하여 FIKA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알고 싶다.

A(임창복)- 인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학인증원을 모델로 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하고 있으며, 가칭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다. FIKA 에서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건축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다. 건설교통부와의 접촉이나 교육부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UIA/UNESCO 등의 기준, APEC Architect 등의 기준을 알아보았다. APEC의 기준에는 해당 국가의 등록원이 필요하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등록원과 인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고 차후에 입장 정리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부의 입장은 공학인증원에서 교육부는 참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근거가 있지는 않다. 정부가 나서서 인증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의학이나 공학 등의 인증이 시행되고 있고, 건축에서도 인증이 진행된다면, 교육부에서도 인증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루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으며, 인증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부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인증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3.9.6. 결론

한국의 건축학교육 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물 ‘한국 건축학 교육인증 표준과 절차’시안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의 건축학전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제인증전문가 참여 시범실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 되었으며 앞으로 진행될 인증제도 수립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 준비기간

모의실사대상 학교로의 선정으로부터 실사 시점까지 주어진 6개월은 실사준비를 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실제로 인증을 시도하는 학교의 경우 더 긴 기간동안 준비가 진행되었으나 인증후보로 선정되고 본 인증에 들어가 실사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이 충분해야 함을 드러내었다. 특히 별도의 예산이 요구되는 경우 경직된 예산운영의 스케줄 상에서 인증을 시도하는 대학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견 가능한 시점에 인증실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사단의 구성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자체평가보고서가 작성되고 실사단에게 미리 충분히 기간을 두고 송부되어야 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시, 해당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역산된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치자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실사대상과목 선정 및 학생 수행평가기준표에 따른 과목별 증거자료비치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절차와 표준상 요구되는 것은 스튜디오의 경우, 실사 바로 직전 해에 이루어진 학기별, 과제별 상,중,하로 평가된 모형/도면 등 스튜디오작업 결과물로 명시되어 있으나 디지털 자료로 대치될 수 있는지의 여부, 프로젝트별로 구비되어야 하는 작품의 최소갯수, 수업과정에 대한 자료의 비치정도, 전임교수 스튜디오와 별개로 외래교수의 스튜디오 결과물도 함께 전시되는가의 여부 등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일반 교과목의 경우 수업계획서/교수용 수업노트/ 수업시 배부된 유인물/ 시험지 및 답안/ 평가된 과제물 등이 요구되었으나 영문으로의 번역여부, 수행평가기준에서 분류한 ‘인지한다’, ‘이해한다’, ‘할 수 있다’의 요건에 해당되는 구비자료의 구체적인 예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

3) 보고서 양식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허락되는지 논의되어야 한다.

연구팀이 제시한 기준에 충실한 보고서 작성시 개별학교의 맥락에서 작성이 불가능한 부분과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로 첨가해야 할 부분이 드러났다.

모의실사대상인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교과과정외의 특강시리즈, 정기심포지엄, 특별공모전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고 전반적인 자체평가가 부가 항목으로 첨가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이 담겨질 수 있는 항목이 보완되어야 함을 드러내었다.

보고서에서 요구되는 항목 중 기술되어야 하는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초점 없는 내용이 될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건축학교육의 5개 주요관점에 대한 대응’부분은 인턴쉽이나 건축사의 계속교육 등 프로페셔널리즘과 건축학교육의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기술해야 하는 구체적 내용의 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드러냈다.

4) 체크리스트의 개발

실사단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항목별로 개발되어야 한다.

모의실사과정에서 현장 점검표가 약식으로 작성되어 실사단에게 배포된 바 있으나 모의실사이니만큼 그 활용정도는 미비하였다.

이러한 현장점검표는 실사단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증규준 및 절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이 현장 실사에서 점검될 수 있도록 항목별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어야 한다.

5) 실사단을 위한 매뉴얼개발

실사단의 구성과 실사과정에서의 행동지침등 인적자원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제인증 전문가와의 사전 회의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성공적인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인적자원을 이용한 공정한 운영이 필수적인 바, 실사단 구성을 위한 자격심사의 항목개발과 프로그램에서 거부할 수 있는 실사단 구성의 구체적인 예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실사단이 현장에서 응할 수 있는 상황과 피해야 하는 상황을 명시하여 자의적인 해석이나 애매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자료공개/비공개의 원칙

인증후보신청부터 실사과정, 후속조치까지 인증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들에 관한 공개여부에 대하여 미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외비 자료와 공개자료를 사전에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교체되는 실사단간의 학습을 위한 투명한 절차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7) 실사단을 위한 풀구성

준비된 실사단 구성을 위한 잠재적 풀이 만들어져 소수의 인적자원에 영향받는 시스템을 피해야 할 것이다. 단기간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인증을 시도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훈련과 학습이 이루어져 지속적인 인적 교체가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무역질서가 WTO체제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과 부합하는 건축학교육에 대한 개편을 이미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4년제로 시행되던 건축교육이 이제는 5년제로 급속히 개편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UIA 등 국제사회는 1년간의 수학년한의 연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교육과정에서 인증제도를 정착시켜 능력과 자질이 있는 건축교육이 되길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화시대에 건축사자격 상호인증에 따른 건축학 교육 인증시스템 개발이 절실한바 한국적 현실여건에 맞는 제도를 도출해 낸 바, 그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건축교육인력 관한 사항으로 2001년 현재 전국 115개 대학의 4년제 건축(공)관련 과정에서 약 8,000명 그리고 일반대학원과 건축대학원 합이 계획진공자는 약 350명 정도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2002년 5년제로 개편된 이후 68개 대학에서 약 3,000명 5개의 건축전문대학원에서만 약 4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매년 배출할 예정임이 조사되었다.

둘째, 1965년부터 2001년까지 배출된 건축사의 총인원은 13,967명이나, 특히 최근에는 1년에 약 500~600명 정도가 선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인증제도에 관한 인식 분석에서는 교수들이 대부분 '잘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들은 '들은 적은 있으나 자세히 모른다'고 답해 인증제도의 소개가 절실함이 밝혀졌다.

그리고 건축사들은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인증 받은 졸업생들을 선출하겠다고 라는 답이 90%이상이고, 응답자의 70% 이상이 비인증 학교의 졸업생과 비교해 대우에서 차등적 적용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은 모두 건축사는 교육인증제도의 도입에 매우 긍정적인이 드러났다.

넷째, 국외 인증사례조사에서, 본 연구를 위해 미국, 영국, 중국의 인증제도 사례를 조사한바, 미국은 단일 과정 인증을 그리고 영국은 교육과정인 파트 1, 2, 3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단계별 인증을,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미국과 같은 단일과정 인증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건축교육내용에서는 재학기간 동안 실습기간의 이수를 요구하는 등 영국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즉 각 나라마다 처한 건축교육 역사가 상이하고 또 전문가 집단과의 관계가 다르므로 이러한 배경을 참고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건축학 교육 인증방법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위와 같은 사례 조사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우리의 건축교육 인증방식은 미국의 인증제도와 같이 교육 및 시설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설정한 후 항목별로 평가하는 계량화된 인증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인증내용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NAAB의 C & P와 CAA(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에서 발간된 Procedures & Criteria를 참조하여 ‘한국어’로 된 ‘한국건축교육 인증원 기준’(KAAB Condition & Procedure)를 작성하였고, 국제화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하였다.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게 우리의 경우 일시에 인증신청학교가 몰리고 인증전문인력의 불충분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증 후보자격제’를 둔 것이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제안이다.

일곱째, 2003. 6. 3-4 모의실사와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2년부터 5년제를 실시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협조하에 미국, 영국, 중국의 인증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동안 연구단이 작성한 한국의 C&P에 대한 검토와 이에 근거한 모의실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전국의 건축과 학과장 초청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외국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와 함께 조언을 받은바 있다.

여덟째,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인증제도 수립에 앞서 보다 심층적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충분한 준비기간의 배려가 필요하고, 비치자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요구되며, 보고서 양식이나 체크리스트 그리고 실사단을 위한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고, 실사단 풀의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상기연구는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건축전문교육의 평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마련된 자료를 근거로 시행하면서 점차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제도적으로 지속적 노력과 관심을 갖도록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5. 인용문헌

국내연구

- 건축국제 교류협의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설계관련 상호인증제도 토론회, 1998. 10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BK21디자인특화사업단, 건축교육제도 개선방향과 경과조치방안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2000. 5, 자료집
- 대한건축학회, 건축교육백서, 1994
- 대한건축학회 및 건축 3단체, 건축실무 및 교육 국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기획 보고서, 1996. 08
- 대한건축학회, 특집: 한국 건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建築, Vol.40 No.10, 1996.10
- 대한건축학회, 건축교육개혁을 위한 실천적 방안,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회의, 1996. 03
- 대한건축학회, 전국대학 건축관련학과 명부, 1998
- 대한건축학회, 21세기를 향한 우리나라 건축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포럼, 1998.10, 자료집
- 대한건축학회,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 개선을 위한 2차 공청회 발표문, 2000.01
- 대한건축학회, 건축학 교과과정 모형 연구, 2001.04
- 대한건축학회,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년 03월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 1999.09
- 대한건축학회, 건축학 및 건축공학 교과과정 모형개발연구, 2001. 8
- 대한건축학회, '신건축교육 프로그램의 모색과 인증' 「건축」 제 45권 1회, 2001. 1
- 대한건축학회, 건축학교육 인증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2002. 10
- 대한건축사협회, APEC 건축사 제도관련 참고자료, 2002. 11
- 대한건축학회, 대학 건축교육 발전을 위한 준비현황과 과제, 2000. 10
- 대한건축학회, '건축교육 개편의 현황과 전망', 「건축」 제47권 제7호, 2003. 7
- 대학교육협의회, 1999년도 건축공학분야 자체 평가 보고서, 전국대학들, 2000. 06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육개혁안, 1999. 12
- 한국건축단체연합, 건축학 교육인증모형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 2003. 6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설립추진위원회 / 설립실무위원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정관 및 일반 인증규정, 1998. 3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설립 실무위원회, 공학교육의 인증·평가, 1999. 4
- 류전희, 미국 건축공학교육의 전개, 한국건축역사학회 논문집, 제 8권 2호, 통권 19호, 1999.06
- , 건축학 프로그램의 개발방향, 建築, Vol.45, No.1 2001.1
- 류전희, 이선영, 국제적 건축 전문교육 인증기준에서 본 한국 건축교육의 현황분석, 한국건축역사학회 논문집, 제 8권 3호, 통권 20호, 1999.09.

이상현, 건축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인증, 建築, Vol.45, No.1 2001.1
 이선영, 전영일, 건축전문학위 인증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8.10, No.120
 이선영, 류전희, 전영일, 미국건축전문교육의 교과내용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1999, 10
 이선영, 미국의 건축학 교육인증제도, 建築, Vol.45, No.1 2001.1
 임창복,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우리나라 건축교육제도 개선 연구, 공학교육연구, 1999
 최재필 외, 건축교육의 미래, 1999, 발언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국토개발연구원, 건설환경변화와 건설산업정책, 1998년 12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총괄 1998년 01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구조조정기의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 및 대응방향, 2000년 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집출판팀,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2001년 03월
 산업연구원 기획행정실, 지식기반경제의 인력정책, 2000년 7월
 산업연구원 기획행정실, 한국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 방안, 2000년 7월
 산업연구원 기획행정실, 지식기반산업의 산업연관분석, 2000년 04월
 통계청, ASEM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2000년 11월
 통계청 국제통계과,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1998년 01월
 통계청 산업통계1과,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1996 1998년 03월
 한국노동연구원 출판실, 지식경제와 인력수요 전망, 2000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력공급구조의 국제비교연구, 2000년 02월

해외연구

ACSA, Guide to Architecture Schools, 6th Edi., ACSA Pr. 1998
 -----, Directory 1999-2000, ACSA Pr. 1999
 AIA,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 Firm Survey 2000/2002, 2000
 Arcasia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 Standards and Systems of Accreditation, 1999.09
 Bannister, Turpin C., Edi. by, The Architect at Mid-Century Evolution & Achievement, Reinhold Pub., NY, 1954
 Bosworth, F. H. Jr., Study of Architectural Schools, NY, Charles Scribner's Sons, 1932
 Boyer, Ernest L. & Mitgang, Lee D., Building Community-A New Future for Architecture Education and Practice, The Carnegie Foundation Press, 1996
 Brady, Darlene A., The Education of An Architect: Community and Change pp32-49, JAE, ACSA, WA, 1996, 6
 Burgess, Jesse H., Quality of Program indicators in United States Architectural Education: A

Statistical Survey, Vol.1-3, Ph. D. Rice University, 1980, UMI, MI

CAA, ARCASIA & The Hongkong Institute of Architects, Remaking The Framework of Architectur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2001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Qualifications in Architecture Recommended for Recognition by CAA: Procedures and Criteria, 1997.12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Qualifications in Architecture Recommended for Recognition by CAA: Procedures and Criteria, Jan. 2000

Frampton, Kenneth & Latour A., Notes on American architectural education-From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until the 1970s, Lotus International, 1980

JAE, No.2 Summer 1947, Proceedings of the 33rd Annual Convention

Jones, M.A., Models for Educating Architects in this century & next, Ph.D., GIT, UMI, 1989

Levy, R. M., The Professionalization of American Architects & Civil Engineers, 1865-1917, Ph.D., U.C. Berkeley, 1980

MIT, Department of Architecture / MIT, Architecture Course 4 ; Class Evaluations, Fall, 1996

Moscow Architectural Institute, Faculty of Fundamental Training, 2002

_____, Curriculum Vitae, 2002

_____, Faculty of General Training, 2002

_____, Faculty of Specialized Training, 2002

NAAB, 1996-97 Accredited Programs in Architecture, NY, 1996

NAAB, 1998 Conditions and Procedures

NAAB, The 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NAAB Handbook ; Visiting Team Chairs and Visiting Team Members, Feb. 2001

NCARB, Education Standard, 1998-1999

NCARB, NCARB Education Standard, 1999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Procedures, Criteria and Policies for the International Validation of Courses, Programmes and Examinations in Architecture, Feb. 2001

Southwest Jiaotong University, Evaluation for Architectural Under-Graduate Education, Jan. 2000

UIA, Proposed UIA Accord on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Report to the 6th Int'l Conference on Architectural Registration, 1996

UIA,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8, 8

UIA,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XXII UIA General Assembly (Berlin), July 2002

Weatherhead, A.C., The History of Collegiate Education in Architecture in the United States, Ph.D. Columbia University, 1941

관련웹사이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http://www.kiep.go.kr>

정부 통계자료: 산업분류별 www.stat.go.kr

종합건설정보망 <http://www.kcn.or.kr>

KDI 경제 정보센터 <http://epic.kdi.re.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개발연구원 <http://kdiux.kdi.re.kr>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 현황, www.cocsa.or.kr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정보센터 <http://cic.kict.re.kr>

한국건축가협회, <http://www.kia.org>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사업, <http://210.122.126.4/kdl-doc/html/white.html>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Architecture, <http://www.acsa-arch.org>

The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 <http://www.ncarb.org>

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http://www.naab.org>

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 <http://www.uia-architectes.org>

- 부 록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기준

KAAB Conditions and Procedures

차 례

1. 인증기구 규정	83
1.1. 인증기구의 목적	83
1.2. 조직의 구성	83
1.2.1. 이사회	83
1.2.2. 사무국	83
1.2.3. 인증 실사단	83
1.3. 인증기구 운영	83
1.3.1. 자원	83
1.3.2. 이사회	84
1.4. 이사회의 업무	84
1.4.1. 학생 수행평가기준의 마련	84
1.4.2. 인증원 기준의 마련	84
1.4.3. 인증 대상 프로그램과의 연락	84
2. 인증절차 개관	84
2.1. 인증 신청서 제출	84
2.2. 인증 신청 접수 및 실사단 구성	85
2.3.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85
2.4.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85
2.5. 실사 일정 결정	85
2.6. 프로그램 실사	85
2.7. 프로그램의 실사단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	85
2.8. 실사단의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보고서 제출	85
2.9. 인증 여부 및 인증조건 결정	86
2.10. 프로그램의 이의 제기	86
3. 인증 기준	86
3.1. 건축학교육 인증의 주요 관점	86
3.1.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소속대학교	86
3.1.2. 건축학교육과 학생	87
3.1.3. 건축학교육과 건축사 자격	87
3.1.4. 건축학교육과 전문분야	87
3.1.5. 건축학교육과 사회	87
3.2. 학생 수행 평가기준	88

3.2.1. 커뮤니케이션	88
3.2.2. 문화적 맥락(역사/행태/환경)	88
3.2.3. 설계	89
3.2.4. 기술	89
3.2.5. 실무	90
4. 인증 신청	90
4.1. 인증 신청 요건	90
4.2. 인증 후보자격	90
4.3. 후보자격 심사 신청의 절차	91
4.3.1. 후보자격 심사 신청서의 제출	91
4.3.2. 후보자격 심사 신청서 심사	91
4.3.3. 후보자격 심사 신청 접수 후속 조치	91
4.4. 신청 절차	91
4.4.1. 인증신청서 제출	91
4.4.2. 인증 신청서 심사	92
4.4.3. 인증신청 접수 후속 조치	92
5. 자체 평가보고서	92
5.1.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92
5.1.1. 프로그램 개요	92
5.1.2. 지난 실사에 대한 대응	93
5.1.3. 건축학교육의 주요 관점에 대한 대응	93
5.1.4. 교과과정	93
5.1.5. 학생 수행평가기준	94
5.1.6. 학생 정보	94
5.1.7. 인적 자원	94
5.1.8. 물리적 자원	95
5.1.9. 정보 자원	95
5.1.10. 재정 자원	96
5.1.11. 연구 활동	96
5.1.12. 부록	96
5.2. 자체평가보고서 심사	96
5.2.1. 승인	97
5.2.2. 조건부 승인과 보완요청	97
5.2.3. 거부	97

6. 실사단	97
6.1. 실사단 구성	97
6.1.1. 실사단 후보	97
6.1.2. 실사단 구성	97
6.1.3. 이해관계의 상충	98
6.1.4. 프로그램 측의 이의 신청	98
6.1.5. 실사단 확정	98
6.2. 실사단의 책무	98
6.3. 현장실사 준비	99
6.3.1. 인증원의 자료 제공	99
6.3.2.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및 검토보고서 회부	99
6.3.3. 실사 일정 결정	99
6.3.4. 실사 현안 결정	100
6.4. 현장실사 시 프로그램의 제공사항	100
6.4.1. 실사단 작업실	101
6.4.2. 교과 정보	101
6.4.3. 학생 성과물 - 일반 과목	101
6.4.4. 학생 성과물 - 스튜디오 과목	102
6.4.5. 교수 성과물	102
6.5. 현장실사업무	102
6.5.1. 실사단 착수회의	102
6.5.2.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103
6.5.3. 시설 견학	103
6.5.4. 프로그램 대표와의 회의	103
6.5.5. 학교행정 책임자, 교수진, 학생과의 시작 회의	103
6.5.6. 졸업생 및 지역실무자와의 접촉	103
6.5.7. 학생, 교수작품 전시회 평가	103
6.5.8. 스튜디오, 강의, 세미나 참관	104
6.5.9. 학교 기록 검토	104
6.5.10. 참관 및 평가후기 회의	104
6.5.11. 인증 심의와 실사단보고서의 초안작성	104
6.5.12. 학교행정 책임자, 교수진, 학생과의 마감회의	104
7. 후속조치	105
7.1. 실사보고서 작성	105
7.1.1. 프로그램 개요	105
7.1.2. 지난 실사에 대한 대응	105

7.1.3. 건축학 교육의 주요관점에 대한 대응	106
7.1.4. 교과과정	106
7.1.5. 학생 수행평가기준	106
7.1.6. 학생 정보	106
7.1.7. 인적자원	106
7.1.8. 물리적 자원	106
7.1.9. 정보 자원	106
7.1.10. 재정 자원	106
7.1.11. 연구 활동	106
7.1.12. 부록	107
7.2. 실사단 업무평가	107
7.3. 비용청구	107
7.4. 인증 심사	107
7.4.1. 인증의 종류	107
7.4.2. 실사단 보고서 확인	108
7.4.3. 인증 심사	108
7.5. 상고와 중재	108

1. 인증기구 규정

1.1. 인증기구의 목적

(가칭)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Korean Architectural Accreditation Board-이하 인증원)은 건축학교육의 내실을 유도하는 건축학교육인증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건축학교육의 전문화와 국제화에 기여하고 건축학전문학위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1.2. 조직의 구성

1.2.1. 이사회

인증원은 건축학 전문교육 인증에 관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기구로서 14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건축학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5명의 건축학 교육자, 2명의 관련분야 교육자, 5명의 실무 건축사,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임명한 담당 공무원 1명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임명한 담당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한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사는 2년간 무보수로 봉직한다. 이사회는 1명의 위원장과 1명의 간사로 구성되는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인증원장을 겸한다.

1.2.2. 사무국

인증원의 사무기구로서 인증원 사무국을 둔다. 인증원 사무국은 이사회의 간사가 총괄한다.

1.2.3. 인증 심사단

인증 심사단(이하 심사단)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적 조직으로서 이사회에 의해 구성된다. 심사단은 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단은 경비 이외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심사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6장 참조)

1.3. 인증기구 운영

1.3.1. 재원

인증원의 재원은 평가를 신청한 학교가 납부하는 신청비와 평가비,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정부예산지원 및 인증원 운영에 참여하는 각 건축 관련단체의 회비로 이루어진다. 재원의 사용방법은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1.3.2. 이사회

이사회 위원장은 일년에 한번씩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임시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 회의 결정은 반드시 전체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이사회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프로그램 인증의 결정
- 2) 규준 개정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5)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4. 이사회 업무

1.4.1. 학생 수행평가기준의 마련

학생 수행평가기준은 인증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본 자료이다. 이사회는 건축학 교육의 인증에 필요한 수행평가기준을 정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4.2. 인증원 규준의 마련

이사회는 건축학 교육의 인증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인증원 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배포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절차와 방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

1.4.3. 인증 대상 프로그램과의 연락

이사회는 인증 받기 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심사하고, 신청을 접수한다. 이사회는 실사 계획과 일정을 마련하고, 실사단을 구성하여 파견한다. 실사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사 후속조치를 프로그램에 전달한다.

2. 인증절차 개관

2.1. 인증 신청서 제출

인증을 희망하는 건축학 프로그램은 인증원에 소정 양식의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

2.2. 인증 신청 접수 및 실사단 구성

이사회는 프로그램이 제출한 신청에 대해 인증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신청을 접수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는 해당 프로그램과 협의하여 실사 일정을 결정하고 5명의 실사단을 구성한다. 이사회는 실사단에게 실사단의 책임과 의무를 공지한다.

2.3.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프로그램은 이사회가 인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자체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5장 자체평가보고서”를 참조한다.

2.4.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실사단은 프로그램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한다. 실사단은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실사단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승인하면, 이사회는 해당 프로그램을 위한 현장 실사를 준비한다.

2.5. 실사 일정 결정

이사회는 자체평가보고서의 검토결과에 따라 실사단 및 프로그램과 협의하여 실사 일정을 결정한다.

2.6. 프로그램 실사

실사 일정이 결정되면 프로그램 측에서는 실사단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시설을 준비한다. (실사단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시설에 대해서는 6장을 참조) 실사단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사를 수행한다.

2.7. 프로그램의 실사단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

실사를 받은 프로그램은 해당 실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2.8. 실사단의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보고서 제출

실사단은 실사단 방문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실사단 방문보고서를 프로그램 측에서 검토하고 실사단과의 협의 하에 수정 보완한다. 실사단장은 실사단이 합의한 최종 방문보고서 및 인증 여부와 인증조건에 대한 제안서를 대외비로 이사회에 제출한다.

2.9. 인증 여부 및 인증조건 결정

이사회는 실사단이 제출한 최종방문보고서와 제안서를 토대로 인증 여부와 인증조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을 해당 프로그램에 통보한다.

2.10. 프로그램의 이의 제기

프로그램은 인증 여부와 인증조건에 대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사회는 이의 제기에 대한 판정 결과를 프로그램 측에 통보한다.

3. 인증 기준

3.1. 건축학교육 인증의 주요 관점

건축교육은 두 가지 기본적 목적을 가진다:
창조적이고 윤리적으로 건강하고 사려 깊고 자격을 갖춘 전문적 설계인/건설인을 길러낸다.
지적으로 성숙하고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훌륭한 세계시민을 길러낸다.
- 유네스코-세계건축사연맹 헌장, 2001.6

유네스코-세계건축사연맹 헌장은 건축사의 교육을 위한 정확한 틀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 바, 건축사는 새로운 세기에 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문화적 유산의 틀 속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기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건축학 교육은 건축이 지닌 여러 차원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각 건축프로그램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확고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국제적 건축교육의 맥락에서 인증원은 다음과 같은 건축교육 인증의 주요 관점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각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개별 프로그램들은 각 대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설립목표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러한 관점들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3.1.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소속대학교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소속된 대학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또한 소속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의 교수진 채용 및 운용기준과 학생선발에 대한 기준
- 소속대학교 내 다른 프로그램과의 상호관계
- 소속대학교 내 해당 프로그램의 학생, 교수진, 교직원들의 학교행정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정도

- 소속대학교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체계

3.1.2. 건축학교육과 학생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실무를 하는 동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 독려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상호 협력하는 방식의 훈련
- 학생들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
- 국내외의 실무 및 다양한 관련분야에의 참여 가능성

3.1.3. 건축학교육과 건축사 자격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인턴쉽 및 건축사 자격 취득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턴쉽 기회부여 방안
- 프로그램과 졸업 이후의 계속교육 방안
- 전문가 윤리강령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 지난 실사이후 졸업생 중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의 비율

3.1.4. 건축학교육과 전문분야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문화적 환경, 다양한 건축주와 그에 따른 법규적 대응, 확대되는 지식기반 등의 맥락 속에서 변화하는 역할에 대해 적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과 실무전문가와의 교류
- 계속교육의 필요성 인지
- 실무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협력작업에 대한 인식
- 관련분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와 존중
- 건축가의 책임과 건축주, 공공, 기업간의 상충되는 이해의 조정역할 습득
- 성실한 전문직수행을 위한 윤리의식 배양

3.1.5. 건축학교육과 사회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사회 및 환경적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건축과 도시 설계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조환경에 대한 다양한 집단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협의 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
-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본 건조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의 윤리적 의미의 이해
- 전문직과 공공서비스를 통한 시민과의 연계의식의 배양

3.2. 학생 수행 평가기준

학생 수행평가기준은 학생들이 건축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획득하여야 하는 성취기준으로서 건축학교육 인증을 위한 교육내용의 기본 틀이 된다.

학생 수행평가기준은 커뮤니케이션, 문화적 맥락, 설계, 기술, 실무에 관한 5개 영역별 3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기준은 39개 항목별로 요구되는 학생들의 수행능력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한다, 이해한다, 할 수 있다’의 세 단계 중 하나에 속한다.

- 인지한다 : 정의, 개념, 법칙, 방법, 과정, 환경 등을 포함하는 특정 정보에 익숙함. 학생들은 문장으로 구사하거나 요약할 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해 낼 수 있음.
- 이해한다 : 정보의 흡수와 이해. 학생들은 해당 정보를 다른 자료에 관련시킬 능력이나 내포된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도 정확하게 문장으로 구사하거나 요약해 낼 수 있음.
- 할 수 있다 : 구체적 정보를 업무 완수에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 학생들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여 특정문제의 해결에 적용시킬 수 있음.

학생 수행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인증의 기본조건이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모든 교직원과 신입생들에게 학생 수행평가기준을 배포해야 한다. 또한 인증원은 관련 기관들이 이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1. 커뮤니케이션

01. 상황과 상대에 맞추어 건축적 아이디어를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적절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02. 각종 건축도서 및 보고서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적절하게 발표할 수 있다.
03. 건축행위에 관련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협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법론 및 지도력에 대해서 인지한다.
04. 건축적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05. 사진 모형 등 미디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설계에 연결시킬 수 있다.
06.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정보의 이용과 관리, 이미지의 표현, 설계과정에 이용할 수 있다.

3.2.2. 문화적 맥락(역사/행태/환경)

07. 건축과 과학 및 예술의 관계를 이해한다.
08. 세계의 건축 역사와 전통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국가 및 지역의 전통성을 이해한다.
09. 건축이 지닌 역사적 사회적 지역적 정책적 상관관계 및 영향을 공시적 통시적으로 이해한다.
10. 역사적 선례들을 비평적 시각으로 건축적 논의에 이용할 수 있으며, 건물 설계나 단

지 계획 도시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11.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이 드러내는 가치 및 관습과 환경과의 상호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12. 물리적 환경과 인간 행동간의 상호관계를 밝혀주는 이론과 방법을 이해한다.
13. 환경적 맥락을 다루는 이론과 원리 그리고 환경의 재생가능성을 이해하여 지속가능한 건축으로 설계할 수 있다.

3.2.3. 설계

14. 건축 및 도시설계의 기초를 이루는 2차원과 3차원 공간 및 형태 질서의 기본 원리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것을 건축적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다.
15. 설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16. 특정대지의 자연적, 환경적, 기후적 맥락과 제한조건을 적절히 해석하여 설계에 통합시킬 수 있다.
17. 프로젝트에 주어지는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조건에서 설계개념을 추출하여 체계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18. 설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완결하기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19. 건물 프로그램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건물재료, 구성부재, 구법 등을 평가, 선정, 배열, 구체화하여 설계에 통합시킬 수 있다.
20. 공사비용이나 건축법규의 제약 조건 내에서 건물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21. 제안하는 설계에 대해 심의와 심사, 시공의 목적에 맞게 기술적으로 정확한 설명과 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22. 증축, 개축, 보수 등의 기존환경을 변경하는 문제를 다양하게 검토 및 판단하고 설계할 수 있다.
23. 개인의 재능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역할을 인지하고 책임을 맡을 수 있으며 설계팀 혹은 기타 다른 상황에서 일원으로 작업할 때 다른 학생들과 협력할 수 있다.

3.2.4. 기술

24. 구조에 관한 기초이론과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이해한다.
25. 다양한 구조시스템의 발전과 한계를 분석하고 현대적 구조시스템의 구성을 이해한다.
26. 환경조절을 위한 지역의 전통적 방법을 이해한다.
27. 조명, 음향, 환경조절, 에너지 관리 등을 포함한 환경 시스템에 관한 기본 원리 및 성능평가방법을 이해한다.
28. 건물의 외피설계에 관한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29. 기계, 전기, 배관, 통신, 보안, 방재, 수직이동 장치 등의 건물 설비 시스템 선정과 설계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30. 시공재료, 구성부재, 조립부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데에 관련된 원리, 관습, 규격, 적용, 제한 등을 이해한다.

31. 건설관리에 관한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32. 환경 재생 가능성과 건축 폐기물의 유해성 및 규제 방식을 이해한다.
33. 지역적으로 취득 가능한 물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시공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다.

3.2.5. 실무

34. 건축실무에 적용되는 사무소 조직, 사업계획, 마케팅, 협상, 재정관리, 지도력 등의 기본원칙들을 인지한다.
35.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설계, 본설계 및 계약에 따른 행정적 업무, 설계관련 분야의 의사결정과 조정, 시공, 공사감리 및 거주후 평가(POE), 시설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에서 건축사의 역할을 이해한다.
36.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데 따른 건축재정, 건물의 경제성, 시공비용 조절 등의 기본적 사항을 인지한다.
37.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들에 상응하는 용역 계약 양식과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전문용역을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서유형을 인지한다.
38. 공중보건과 공공의 안전 및 복지, 재산권, 건축법규, 장애자의 접근 편의, 기타 설계, 시공,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건축의 제반 관련법규 조항들과 이에 대한 건축사의 법적 책임을 인지한다.
39. 건축주와 사회에 대한 건축사의 책임을 인지하고, 전문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이해한다.

4. 인증 신청

4.1. 인증 신청 요건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학부의 경우 5년제의 독립된 건축학 프로그램, 대학원의 경우 2년제 이상의 독립된 건축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전체를 이수한 졸업생이 1회 이상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의 달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2. 인증 후보자격

인증원으로부터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인증원은 인증 후보 자격을 심사한다. 후보자격 심사는 인증 심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지만 보다 간략하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인증 후보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후보 자격을 획득하였다는 것은 단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의

미할 뿐이며, 인증 후보 자격은 인증이 가지는 효과와 전혀 무관하다.²⁾

인증후보자격 신청 시기는 프로그램의 개시 후 학부의 경우 3년, 대학원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4.3. 후보자격 심사 신청의 절차

4.3.1. 후보자격 심사 신청서의 제출

신청 프로그램은 이사회에 후보자격 심사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며 인증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개황과 학과 역사의 소개
- 학과의 조직 소개
- 교수진
- 학생 현황
- 교과과정
- 학교 전체의 도서, 정기 간행물
- 전공에 관한 도서와 정기 간행물의 구체적 상황
- 실험실, 컴퓨터, 그리고 기타 시설 소개
- 수업 현황

4.3.2. 후보자격 심사 신청서 심사

인증 신청서 심사의 과정과 동일.

4.3.3. 후보자격 심사 신청 접수 후속 조치

인증 신청서 접수 후속 조치의 과정과 동일하나 후보자격신청 및 승인 여부는 대외비로 한다.

4.4. 신청 절차

4.4.1. 인증신청서 제출

신청 프로그램은 이사회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며 인증신청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학교 개황과 학과 역사의 소개
- 학과의 조직 소개

2) 이러한 의미에서 ‘후보인증’, ‘가인증’ 등의 용어가 아닌 ‘후보자격 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것이 어떠한 종류의 인증도 아님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정식인증’ 등의 용어를 기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이다.

- 교수진
- 학생 현황
- 교과과정
- 학교 전체의 도서, 정기 간행물
- 전공에 관한 도서와 정기 간행물의 구체적 상황
- 실험실, 컴퓨터, 그리고 기타 시설 소개
- 수업 현황
- 인증후보 자격획득시기

4.4.2. 인증 신청서 심사

이사회는 인증신청서를 심사하여 인증신청 접수 또는 인증신청 접수 거부를 판정한다. 인증신청서 심사가 통과된 경우 이사회는 인증신청 접수 사실을 해당 프로그램에 통보한다. 인증신청 접수 거부 판정인 경우 이사회는 인증신청 접수 거부의 사유를 포함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거부 사실을 통보한다.

4.4.3. 인증신청 접수 후속 조치

인증신청이 접수되면 이사회는 실사단을 구성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6개월 이내에 자체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실사단에 전달하고 실사단에 의해 자체평가보고서가 승인되면 프로그램과 협의하여 실사 일정을 결정하고 실사단을 구성한다.

5. 자체 평가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는 프로그램의 교육여건 및 자원, 전반적 교육환경을 기술한다. 이 보고서는 현장 실사를 준비하는 기초자료로 쓰인다. 또한 실사단이 이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교수진, 학생, 대학의 주요 행정담당자, 실무진 측가 등과 협력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5.1.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5.1.1. 프로그램 개요

- 소속 대학교의 개요
- 소속 대학교의 설립목표
- 프로그램의 연혁
-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프로그램의 고유한 특성과 설립목표를 기술한다.

- 프로그램의 세부계획

프로그램의 설립목표를 성취하는데 지침이 될, 소속 대학교의 승인을 받

은 세부계획을 기술한다. 이 세부계획은 프로그램의 자체평가과정의 기준이 되며 실사단이 해당 대학교 내에서의 프로그램의 역할과 미래 발전계획에 대해 예견하도록 도움을 준다.

5.1.2. 지난 실사에 대한 대응

자체평가보고서는 지난 실사에서 지적받은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미비점에 대한 대응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지난 실사에서의 지적된 미비점 요약
- 미비점에 대한 대응내용 요약
- 인증원 기준 변화에 대한 대응 내용 요약

5.1.3. 건축학교육의 주요 관점에 대한 대응

자체평가보고서는 건축학교육과 소속대학교, 건축학교육과 학생, 건축학교육과 건축사자격, 건축학교육과 전문분야, 건축학교육과 사회라는 5개 항목에 대한 대응 내용을 해당 프로그램의 설립목표와 연계시켜 기술한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설립목표의 이행, 세부계획의 실천, 설정된 사안별 충족 요건에 대한 자체평가를 기술해야 한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자체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
- 프로그램의 설립목표의 개별 항목과 관계된 진행사항
- 프로그램의 세부계획의 각 항목과 관계된 진행사항
- 프로그램 전반의 교과과정과 개별교과목에 대한 교수, 학생, 졸업생의 평가
- 프로그램의 강점과 미래의 방향
- 추가적 관련 정보

5.1.4. 교과과정

건축학교육의 교과과정은 졸업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 사고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제공되는 학위에 대한 설명
- 교양과목, 전공과목, 선택과목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의 틀에 대한 설명.
- 교과과정 이수 체계에 대한 도표
- 각 과목의 강의 요목과 평가 방법
- 교과과정의 학년/수준별 목표
- 스튜디오 과목과 일반과목의 구분
- 각각의 학위에 대해 학생들이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부전공의 예
- 각 과목별 이수학생/낙제생/재수강생에 대한 현황

5.1.5. 학생 수행평가기준

프로그램은 졸업생들이 소정의 교과과정을 통하여 학생수행평가기준에 명시된 기술과 지식을 검비하여 각 기준을 충족시켰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해 인정학점이 주어진 경우 해당 과목들이 프로그램 내 개설 교과목과 상호인정 가능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인증원이 마련한 기준 항목의 충족여부를 자체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교과과정의 목표 및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동시에 자체 평가한다. 인증원은 프로그램이 보유한 창의적이고 독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학생 수행평가기준을 만족시킨다면 이러한 혁신적 방법들을 존중해 줄 것이다.

학생 수행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은 자체평가보고서의 핵심 부분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학생수행평가기준에 따른 과목 설치 및 과목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설치된 과목들을 통한 교육 목표 달성에 대한 설명
- 필수과목들과 해당되는 학생수행평가기준들을 상호교차 확인하여 보여주는 도표

5.1.6. 학생 정보

자체평가보고서는 1) 학생에 대한 일반적 현황, 2) 학생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대한 명확한 정책보유 여부, 3) 각 단계별 입학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체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학생들의 교육적 배경 및 일반적 현황
- 프로그램의 특성과 관련한 입학생들의 특성
- 교수/학생비와 산출근거
- 지난 인증실사 이후 프로그램의 입시, 편입학 등의 지원률, 학생보유율, 졸업까지의 시간 등에 관한 설명
- 전문학위 인증제도를 소개한 프로그램 안내책자의 배부여부
- 학문적 또는 개인적 상담, 취업지도, 발전사항 평가, 인턴쉽에 대한 기회제공 등의 학생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
- 학생들의 현장답사, 캠퍼스 외부활동에 참여기회 제공 증거
- 캠퍼스 내 학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에 대한 증거
- 입학 및 편입 기준, 그 기준과 프로그램의 목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
- 전체 학년(학기)당 정원, 등록학생, 편입학생, 통과학생, 탈락학생 수

5.1.7. 인적 자원

프로그램은 건축학프로그램을 위한 효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히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교수 정원, 효율적 행정업무를 위한 교

직원, 보조 직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신의 연구 및 학문을 위한 시간과 전문적 개발을 위한 실무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교수의 총 수업부담이 정해져야 한다.

특히 설계 스튜디오의 교수진은 학생에 대해 충분한 개인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생 일인당 1주일에 40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자체평가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설계 스튜디오의 수강학생 수
- 설계1 학점 당 교육시수 및 시간
- 교수의 수업부담
- 해당 프로그램의 교수진
 - 이름, 학력/ 경력, 임용일, 직급/ 직위
 - 담당 강좌 및 수업 평가
 - 이력서 및 최근 업적
- 외부 강사(설계스튜디오 및 강의, 초청 강연, 초청 크리틱) 현황
 - 이름, 학력/경력
 - 담당 강좌
- 기술 및 행정 직원, 보조직원
 - 이름, 임용일, 직급/ 직위
 - 담당 업무

5.1.8. 물리적 자원

자체 평가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면과 위치, 면적, 수량 등 구체적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설계 스튜디오
-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학생 개인의 자리
- 세미나실, 강의실
- 교수 연구실
- 프로젝트 평가 및 전시실
- 도서실
- 컴퓨터 시설
- 워크샵 및 교육용 기자재
- 연구 기자재 및 시설

5.1.9. 정보 자원

정보 자원이 학교의 설립목표, 세부계획, 교과과정과 전문적 연구분야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중앙도서관 혹은 독립적인 전공도서관 자료는 인쇄, 시각, 전자 매체 등을 포함하며 그 규모, 범위, 내용, 최신자료, 과거자료, 활용성 등이 건축에 있어서의 전문 학위 프로그램에 적절해야 한다. 균형 잡힌 건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서적과 기타 지원서적들과 함께

KDC 610-619 혹은 DDC 720-729에 해당하는 주요한 기본서적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해당 전공 특유의 설립목표와 실행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다른 청구기호의 서적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5,000권의 개별적 도서 분류번호를 가지는 서적이 요구되며 적절한 시각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³⁾ 시각 자료와 기타 비서적 자료들은 전체 건축학교육의 일부분으로 고려되며 학생들은 이러한 자료에 직접적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자체평가보고서는 다음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 이용 가능한 도서관과 유형
- 각 도서관별 장서, 정기 간행물
- 각 도서관별 시각자료, 기타 비도서자료
- 각 도서관별 전담 사서 유무(시간제 혹은 전일제)
- 각 도서관별 자료 검색 수단
- 각 도서관별 지속적으로 도서자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예산 지원 내용

5.1.10. 재정 자원

프로그램은 소속 대학교내 다른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기관차원의 지원과 재정자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체 평가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프로그램 예산, 기증, 장학금
- 기관 내 다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학부생과 대학원생 1인당 연간 경비에 대한 비교 자료

5.1.11. 연구 활동

프로그램은 그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교육의 질의 제고를 위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설명하고 그 성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교수연구에 대한 정책, 연구/자문 활동 영역 및 성과
- 연구비가 제공되는 프로젝트 목록
- 연구 활동과 인증 대상 교과 과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 교육목표와의 관련성
- 지난 5년간 석사 및 박사 과정에 등록된 학생수,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제목 등의 사항은 해당할 경우 포함시킬 수 있다.

5.1.12. 부록

5.2. 자체평가보고서 심사

평가를 신청하는 프로그램은 신청이 접수되면 이사회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자체평가보고서와 검토서식을 지체 없이 실사단에 전달한다. 실사단은 자체

3) 적절한 선으로 조정 검토

평가보고서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검토보고서를 이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일차적 목적은 보고서의 명료성과 완결성을 평가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가 프로그램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실사단이 판정하는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5.2.1. 승인

자체평가보고서가 승인으로 판정되면 실사단은 이사회에 이를 통보하고, 이사회는 프로그램 측과 협의하여 실사 일정을 결정한다.

5.2.2. 조건부 승인과 보완요청

자체평가보고서 내용 중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실사단은 보완을 요청하거나 근거자료를 요청하며 조건부승인을 하여 이사회에 통보한다. 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1개월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보완자료가 만족스러울 경우 실사단은 이사회에 승인을 통보하고 이사회는 프로그램 측과 협의하여 실사 일정을 결정한다.

5.2.3. 거부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이 학생 수행평가기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거나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과시키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2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실사단은 이사회에 거부 결과를 전달하고 이사회는 거부 사유를 프로그램에 통보한다.

6. 실사단

인증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사회는 실사단을 구성한다. 실사단은 크게 보아, 프로그램 측의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작업, 현장 실사 작업, 인증 여부에 대한 대외비 제안서와 현장실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6.1. 실사단 구성

6.1.1. 실사단 후보

이사회는 실사단 후보명단을 매년 초 작성한다. 실사단 후보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건축사단체, 건축학교육단체, 학생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한다. 후보자들은 적어도 4년간은 실사단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한다. 인증원은 피추천자들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한다.

6.1.2. 실사단 구성

실사단은 실사단 후보명단으로부터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실사단은 총 5인이며, 실무 건축사 2명, 건축 및 관련분야 교육자 3명으로 구성된다.

실사단은 실사단장과 실사단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실사단장을 임명한다. 실사 업무 경험을 축적하고 실사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실사 업무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구성원이 최소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실사단을 구성한다.

- 참여 가능여부
- 이해관계의 상충
- 대상 학교상황과의 적합성에 관한 사안(학위 유형, 프로그램의 규모,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주안점, 학제 등)

6.1.3. 이해관계의 상충

이사회는 실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실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사회는 앞의 과정에서 구성된 실사단원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해당 프로그램에 소속했었거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실사단에 포함될 수 없다.
- 프로그램이 인정할 만큼 충분히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프로그램의 건축학적 관점과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건축과 건축학 교육에 관한 균형 잡히고 다양한 관점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6.1.4. 프로그램 측의 이의 신청

실사단이 구성되면 이사회는 실사자 명단을 프로그램에 전달한다. 이해관계의 상충과 관련하여 대상 프로그램의 이의신청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2명 이하의 실사단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교체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사회는 실사단원을 교체한다.

6.1.5. 실사단 확정

프로그램의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이사회는 실사단장의 선정을 포함하여 실사단을 확정한다. 확정된 실사단 명단을 프로그램에 전달하고 실사단원에게 확정 사실을 통보한다.

6.2. 실사단의 책무

인증원은 실사단장과 실사단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책무사항이 있다는 것을 공지할 책임이 있다.

- 인증원에 어떠한 이해관계의 상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 인증원 기준, 프로그램의 자체평가보고서, 실사단 보고서 형식, 각 실사단원의 이력서에 대해 완벽하게 검토한다.
- 실사 마지막 밤까지 모든 사안에 관하여 실사단의 합의를 반영하는 실사단 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업무 중 취득하게 된 내부정보의 누설을 엄격하게 금한다.
- 학교로부터의 선물, 접대 수락을 금한다.
- 구직 행위를 금한다. 학교의 인증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학교에 채용되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 개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구조, 행정, 교육에 대한 사적인 견해를 강요하거나 인증원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 부족사항에 대하여 과민 반응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행동은 금한다. 인증 절차는 구조화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계속 명심하여야 한다. 이 구조화된 방법에 의해 프로그램의 부족사항을 시정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다. 부족사항에 대하여 꾸중하는 태도 혹은 위협적 태도로 과민 반응하거나, 반대로 낙관적 태도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 지위에 압도되지 않는다. 명문 학교 실사 시에 발견되는 부족사항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 명문 학교의 지위를 고려하여 부족사항을 축소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6.3. 현장실사 준비

6.3.1. 인증원의 자료 제공

실사단 구성이 확정되면 인증원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실사단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실사단원은 아래의 정보 이외에 기타 프로그램의 자체평가보고서, 실사보고서, 연례보고서 등을 인증원에 요청할 수 있다.

- 실사단 구성원 연락처
- 최신의 인증원 기준
- 최신의 학생 수행평가기준
- 해당 프로그램의 자체평가보고서
- 해당 프로그램의 이전 실사보고서
- 해당 프로그램의 연례보고서
- 실사보고서 형식

6.3.2.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및 검토보고서 회부

“5장 자체평가보고서”의 ‘나’항에 따른다.

6.3.3. 실사 일정 결정

실사단원과 이사회, 해당 프로그램은 실사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실사일정은 최소 3일이며 학기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실사단장은 세부 실사일정과 숙박 및 회의 등의 장소를 프로그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실사단원에게 알린다.

6.3.4. 실사 현안 결정

대략적으로 전형적인 실사 현안은 다음과 같다.

- 실사단 착수회의
- 자체평가보고서 토의
- 시설 견학
- 학교 행정직원, 행정 최종 책임자, 교수진, 학생과의 회의
- 학생 대표와의 회의
- 졸업생 및 지역 실무자와의 접촉
- 학생, 교수 작품 전시회 평가
- 스튜디오, 강의, 세미나 참관
- 일반과목, 선택과목, 연관 프로그램 평가
- 학교 기록 평가
- 참관 및 평가 후기 회의
- 인증 심의 및 실사단 보고서 초고 작성
- 학교 행정직원, 행정 최종 책임자, 교수진, 학생과의 마감회의

비록 전형적인 실사 현안들이 있지만, 현장 실사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은 각 프로그램이 처한 상황에 따라 동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사단은 유연성을 가지고 실사현안을 프로그램 측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실사 현안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업무상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특수한 맥락에 따라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
- 실사단의 활동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 실사단이 자신들의 실사내용을 자체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 실사단 보고서 초고 작성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 교수진, 졸업생, 학생 등의 실사단 접견행사는 친교행위가 아니라 업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실사단원은 행사장에서 음주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실사단원들끼리 모여 있지 않고, 행사 참여자들과 다양하게 어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든 실사단원은 전체 실사 과정에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6.4. 현장실사 시 프로그램의 제공사항

교과 정보와 학생 성과물 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프로그램의 역량에 달려있다. 프로그램은 자신의 교육내용이 인증에 적합한지, 학생들의 성취가 수행평가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효율적 방법을 통해서 제시하여야한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 인증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실사단이 전 교과과정 및 스튜디오와 일반교과목들의 통합 등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교과정보 및 학생성과물을 프로그램의 1년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스튜디오 작업을 다른 교과목들과 분리하기보다 1년 단위의 문서 전체를 한 부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1. 실사단 작업실

대상 학교 내, 프로그램 내부 시설 또는 프로그램과 가까운 곳에 실사단작업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실사단은 실사기간 중 작업을 실사단 작업실에서 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실사단장은 모든 필요한 자료들의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이 끝나면 실사단장은 실사 회의안전과 실사단의 이력서를 실사단 작업실 근처에 게시한다.

- 대외비 문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적절한 수준의 방음이 이루어져야 한다.
- 모든 실사단을 수용할 수 있는 의자와 회의 탁자가 있어야 한다.
- 전화와 인터넷 등의 정보, 통신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충분한 수의 컴퓨터, 그리고 적절한 주변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실사에 요구되는 자료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6.4.2. 교과 정보

프로그램은 실사단 사무실에 프로그램이 개설한 과목들에 대해 다음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각 자료는 실사 바로 직전 해의 것이어야 한다. 각 교과과목들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학생 수행평가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정리, 분류해야 한다.

- 학생에게 제공되는 강의계획서
- 학생에게 제공되는 참고 문헌
- 학생 출석사항과 내용이 담긴 강의 혹은 관련 문서
- 학생이 작성하는 강의 평가서
- 학생의 참가 목적이 기록된 답사 문서
- 학생 시험지, 보고서
- 학생 발표를 기록한 비디오테이프 혹은 디지털 자료
- 교과과정의 학생 성적분포

6.4.3. 학생 성과물 - 일반 과목

프로그램측은 실사 한 해 전에 채점된 전공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에 대한 자료를 실사단 작업실 내에 구비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관련 프로그램과 안내책자가 같이 비치되어야 한다.

각 과목의 강의노트를 구비하는 것이 유용하다. 교과목의 프리젠테이션은 반드시 주별 활동들과 과제를 보여주는 강의계획서, 참고문헌, 퀴즈, 시험, 그리고 관련되는 학생들의 결과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결과물(공동작업 포함)은 수준/학년별로 정리하도록 한다. 학생 성과물은 최저부터 최고까지 모든 학점 등급별로 일정량 이상 구비되어야 한다.

6.4.4. 학생 성과물 - 스튜디오 과목

실사단 작업실에는 이름과 작품설명이 명시된 학생 작품들이 보기 쉽게 전시되어 있어야 한다. 최저 점으로 과정을 통과한 작품과 우수한 작품이 모두 전시되어야 한다. 전시된 모든 프로젝트의 수업 과제물들은 반드시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학생이 수행평가에 부합하는지를 보여줄 만큼의 충분한 수량의 작품이 전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시되는 작품은 실사 전개의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한다.

작품에는 반드시 날짜 및 최저부터 최고까지 모든 학점 등급별로 성적이 표시되어야 하며 개설된 스튜디오와 그 스튜디오가 목표로 하는 수행평가 기준의 항목에 대해 교차 비교되어야 한다. 실사단 작업실 밖에서 하는 전시는 자유롭게 해도 좋지만, 그것이 실사단 작업실의 전시들과는 대체될 수 없다.

학생의 스튜디오 성과물 패널을 수평으로 쌓아놓는 것보다는 수직면에 대부분의 시각자료들을 붙여놓는 것이 유용하다. 스튜디오에서 행해진 작품들의 프리젠테이션은 스튜디오 별로 취해진 접근방식의 전 범위를 포괄하면서 다양한 비평에 의해 나온 과제들을 다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과제들, 유인물들, 참고문헌들, 학생들의 관련된 도면들이나 모델들 같은 예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6.4.5. 교수 성과물

프로그램측은 실사단 사무실 내에 교수진의 작품 또는 연구 성과물 중 최근 3년 이내의 것들을 교수별로 비치한다. 교수의 사진과 이력서를 함께 비치하는 것이 유용하다.

6.5. 현장실사업무

현장실사를 통해 실사단은 프로그램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자체평가보고서를 검증하고 보완하여 프로그램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실사단은 학내에서의 프로그램 여건에 대한 서류 검토, 학생과 교수 전시회 심사, 무작위 인터뷰 실시, 시설물들의 시찰 등을 통해 자체평가보고서로는 검증되지 못한 부분들의 확인 작업 등을 행한다.

아래 명시된 현장실사업무는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구성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6.5.1. 실사단 착수회의

이것은 실사현안의 의무적 요소로서, 인증원 기준 검토, 프로그램의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인터뷰 절차에 대한 논의, 그리고 실사단의 팀작업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결정 등을 포괄한다.

6.5.2.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자체평가보고서에 의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실사단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실사 중에 행해야 할 질문들을 도출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다. 이 토의를 바탕으로 실사단장은 실사단의 과제를 구체화시켜서 실사 현안의 세부사항을 교정한다.

6.5.3. 시설 견학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시설의 견학(건축대학 건물, 교내건물 및 커뮤니티시설 등), 또한 미디어센터, 작업실, 실험실들의 담당직원들과의 회의를 포함한다.

6.5.4. 프로그램 대표와의 회의

이것은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사단으로부터 제기된 이슈에 대한 토의, 프로그램의 전략적 발전계획과 자체평가, 지난번 실사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된 것, 실사 현안의 변경 요구, 그리고 실사단에서 요구한 추가자료 등을 포함한다.

6.5.5. 학교행정 책임자, 교수진, 학생과의 시작 회의

이것들은 각기 별도의 회의로서 각 입장에 따른 시각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의 강점과 관심사, 자체평가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들, 학교, 대학 그리고 기관 전체의 다른 교육과정들과 프로그램 사이의 상호 관계들, 그리고 기대되는 실사의 결과 등을 위한 것이다.

- 학교행정 책임자와의 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교의 계획들을 탐색할 수 있다.
- 교수진과의 회의는 반드시 다양한 교육영역의 모든 직급의 교수들이 참여하여야 하며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분야의 교수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학교 행정직원과 교수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의 회의가 열려야 한다. 이러한 모든 회의의 내용은 학교측에 알리지 않는다.

6.5.6. 졸업생 및 지역실무자와의 접촉

이것은 일반적으로 동문들과 그 지역의 건축사 단체 담당자 등을 포함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실사단에게 프로그램의 변천과, 전문가 집단내 해당 프로그램 졸업생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6.5.7. 학생, 교수작품 전시회 평가

실사단은 실사단 작업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요구되는 성취도에 따라 평가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단장은 실사 초기에 학생 작품에 대해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5.8. 스튜디오, 강의, 세미나 참관

실사단원들은 흠어져서 각 수업을 참관할 수도 있다. 저녁 시간대는 계획되지 않은 스튜디오 활동을 관찰하는데 좋은 시간이다.

6.5.9. 학교 기록 검토

실사단장은 실사 초기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록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 학기 혹은 특정 과목에 관한 성적표
- 특정과목의 학생들이 작성한 강의평가서
- 최근 졸업생의 성적증명서
- 전 학년에 걸쳐, 편입생의 기존 교과과정 통합 처리절차에 대한 문서 및 실제 처리에 관한 증빙자료
- 교수진의 업무평가, 재임용 및 승진 등과 관련된 행정적 기준 및 절차와 교수에게 요구되는 기대치에 대한 문서
- 학생 지도 지침 문서
- 교수진에 대한 학생지도 배분방식
- 학생 선발, 휴학, 졸업에 관한 문서
- 프로그램의 교수가 참여하는 각종위원회의 의무 및 업무 사항
- 추가 예산 관련 정보
- 기타

6.5.10. 참관 및 평가후기 회의

매일 저녁 실사단은 그 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 평가하며, 담당 업무를 조정하고, 그리고 부가적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6.5.11. 인증 심의와 실사단보고서의 초안작성

실사 마지막 날은 각 인증 기준에 대한 프로그램의 충족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평가의 초안을 만든다. 그리고 인증원 이사회에게 보내는 인증기간에 대한 대외비 제안서를 전원 동의하에 작성한다.

6.5.12. 학교행정 책임자, 교수진, 학생과의 마감회의

이러한 회의에는 실사단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실사단들의 평가를 요약하여 제시하며 이는 실사단보고서에서 나타날 모든 핵심 내용들과 엄격하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 회의에서 실사단은 인증기간에 대한 실사단의 대외비 제안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프로그램의 장과 대학의 행정책임자들과의 마지막 회의에는 학교의 총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교수진과 학생간의 회의는 프로그램 전체 회의로 이루어진다. 이 회의에서는 토론 없이 실사단들이 실사에서 느낀 개인적 통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다.

7. 후속조치

7.1. 실사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교육의 질에 대해 평가하는 실사단보고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 이는 이사회 회의의 인증여부 결정을 위한 필수적 자료로 사용되며 대상 프로그램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그 대학교 내에서의 대상 프로그램의 위상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와 미래의 학생에게 프로그램의 성격과 충실성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처럼 실사단보고서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간결하고 일관성 있어야 한다. 실사단은 실사보고서와 함께 인증 여부와 종류에 대한 대외비 제안서를 이사회에 전달한다.

최초 실사단 보고서 초안은 실사기간 중에 작성된다. 최종 실사단 보고서는 실사 후 30일 내에 인증원에 전달되어야 한다. 실사 후 최소한 10일 이내, 실사단장은 실사단에게 정리된 2차 원고를 배포한다. 개별 실사단원들은 실사단장에게 그들이 2차 원고를 받은 후 최소한 10일 이내에 수정부분을 제안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실사단장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원고를 완성하여, 실사단을 소집하고 최종원고를 검토한 후 전체 실사단원의 서명을 받는다. 최종원고는 기한 내에 인증원에 송부되어야 한다.

실사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7.1.1. 프로그램 개요

실사단은 프로그램이 자체평가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를 축약해서 다시 작성한다.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소속대학교의 설립목표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와 프로그램이 세부계획을 통해 그 설립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에 대한 견해를 제공한다. 실사단은 프로그램 설립목표나 세부계획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7.1.2. 지난 실사에 대한 대응

- 미비사항의 제기에 대한 프로그램의 진척사항
 - 실사단은 프로그램의 “진척사항의 요약”을 인준한다.
- 인증기준 충족/ 인증기준 미충족
 - 실사단은 충족 혹은 미충족인 기준들을 개조식으로 나열한다. (학생수행 평가기준의 번호와 제목을 포함) 특정기준의 충족 혹은 미충족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인증을 위한 기준준수”에서 기술된다.
- 문제의 지적
 - 실사단은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결함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적해줄 수 있다.

■ 실사단 견해

-실사단은 인증기준에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사항에 대해 언급한다.

7.1.3. 건축학 교육의 주요관점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이 인증원의 5개 관점에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프로그램이 당면과제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7.1.4. 교과과정

교양과목, 전공과목, 선택과목 배분에 관한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한다.

7.1.5. 학생 수행평가기준

각 수행평가기준에 맞추어 학생의 작품을 평가한다. 매우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러운 각 기준에 대해 실사단은 참관 결과를 진술한다.

7.1.6. 학생 정보

학생의 발전을 위한 기회제공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각 단계별 입학 기준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7.1.7. 인적자원

인적 자원이 적절한가를 평가한다.

7.1.8. 물리적 자원

물리적 자원이 적절한가, 안전한가, 접근가능한가를 평가한다.

7.1.9. 정보 자원

도서관이 규모, 장서의 범위, 직원, 서비스 면에서 적절한가를 평가한다.

7.1.10. 재정 자원

소속대학교 차원에서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타 프로그램 대비 형평성을 평가한다.

7.1.11. 연구 활동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교육 질의 제고를 위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한다.

7.1.12. 부록

- 실사단
실사단 참가자 목록
- 실사업무
시간, 장소, 참석자 등 실사와 관계된 모든 활동들을 보여주는 실사현안을 서술한다.
- 보고서 서명
실사단의 구성원들은 보고서에 서명한다.
- 인증원에 대한 대외비 제안
실사단의 각 구성원은 인증원에 제출되는 인증기간에 대한 대외비제안에 서명한다.

7.2. 실사단 업무평가

프로그램은 실사 후 실사단 업무에 대한 공식적 평가를 한다.

실사단 업무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실사단의 실사 수행에 대한 논평
 - 방문 전 프로그램과의 커뮤니케이션
 - 자료 검토의 철저함
 - 프로그램의 독자성에 대한 반응
 - 프로그램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공정성
 - 마감 회의의 수준
 - 현장 실사의 수준
- 인증원과의 커뮤니케이션
- 인증과정의 주요한 긍정적 결과
- 인증과정의 주요한 부정적 결과

7.3. 비용청구

실사가 종료된 즉시 실사단원은 비용상환청구 서식을 작성하여 교통비, 식사비, 그리고 호텔 숙박비 등의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7.4. 인증 심사

7.4.1. 인증의 종류

- 5년 유효 기간 인증
-5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 조건부 2년 인증
 - 어느 정도의 부족사항이 있는 경우 실사단이 2년 뒤 방문 전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표시하고 2년간 인증을 부여한다.
- 인증의 일시적 정지
 - 중대한 부족사항이 있는 경우 1년간 인증 정지를 부여한다. 실사단이 1년 후에 방문할 때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표시한다.
- 인증 거부
 - 심각한 부족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을 거부한다.

7.4.2. 실사단 보고서 확인

실사단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사회는 실사단보고서를 해당 프로그램에 보낸다. 프로그램은 보고서를 받은 15일 안에 회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실사단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간주한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보고서의 중대한 수정을 요구한다면 그것들의 처리내용에 대한 복사본을 모든 실사단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실사단보고서는 실사단과의 협의 하에 이사회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으며, 그리고 개정된 실사단보고서는 프로그램과 모든 실사단원들에게 배포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실사단 보고서에 영구적으로 첨부된다.

7.4.3. 인증 심사

인증 결정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실사단 보고서, 실사단의 대외비 제안서, 프로그램이 사전에 제공한 모든 형태의 관련 정보 등의 자료를 고려하게 된다.

인증 종류에 대한 결정은 다음 사항에 의해 결정된다.

- 프로그램이 자체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 개선작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 프로그램은 직전 실사시 지적된 부족사항을 개선시킬 합리적 절차를 만들고 있는가
- 프로그램은 전문학위 제도를 위한 인증원 규준에 부합하는 전반적 학습환경을 제공하는가
- 프로그램은 학생수행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졸업생들을 배출하는가
- 프로그램은 전문학위 제도를 위한 인증원 규준에 부합하는 장서를 가지고 있는가
- 프로그램은 적합한 성취도 수준을 유지할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7.5. 상고와 중재

프로그램은 인증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인증 결정이 나온 지 15일 내에 이사회에게 상고할 수 있으며 30일 내에 이사회에게 서류를 내고 상고 이유를 설명한다. 상고는 인증의 결정이 인증의 일시적 정지나 인증거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프로그램이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인증원 또는 실사단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사회 의장은 상고신청을 받은 후에 프로그램이 제출하는 상고신청서를 별도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보낸다. 중재위원회에는 건축 관련단체와 공공을 대표해서 선출된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며 인증원의 이사는 포함될 수 없다.

중재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이를 프로그램과 이사회에 통고한다. 청문회가 열리면 프로그램과 이사회는 각 2명의 대표를 보내고 중재위원회에 참석한다.

중재위원회는 청문회가 끝난 3일 내에 중재 결론을 내린다. 서면으로 중재 결과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프로그램과 이사회에게 전달한다. 중재위원회의 중재결론은 최종 결론이고 프로그램과 이사회에 동등한 결속력이 있다.

상고와 중재 업무는 반드시 상고서가 제출된 100일 내에 끝나야 되고 중재와 관련된 합당한 직접 경비, 즉 예를 들어 회의실을 위한 비용, 여행경비, 식사비, 그리고 프로그램 대표들과 중재위원회의 숙박비 등은 프로그램에서 부담한다.

주관연구책임자 : 임 창 복 (성균관대학교)

세부연구책임자 : 최 재 필 (서울대학교)
정 진 국 (한양대학교)
이 상 현 (건국대학교)
이 선 영 (서울시립대학교)
류 전 희 (경기대학교)
조 성 중 (일진건축사사무소 대표)
이 정 근 (우리계획 대표)

연 구 보 조 원 : 이 진 혁 (성균관대학교)
황 용 하 (서울대학교)
최 현 철 (서울대학교)

※ 본 자료집은 한국과학재단 수행과제(번호: R01-2001-000-00465-0)에 의한 연구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